

古文書集成
77

— 義城 鵝州申氏 梧峯家門 · 虎溪家門篇 —

韓國學中央研究院

이 책의 二〇〇四年版 改訂版은 前版의 資料部 學術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表紙題字 四鑄甲寅字(戊申字) 集字

目次

■ 解題	
■ 凡例	
○ 虎溪家門 古文書	
一。 教令類	3
(一) 白牌	3
二。 疏・劄・啓・狀類	4
(一) 所志類	4
三。 明文・文記類	5
(一) 分財記	5
四。 證憑類	8
(一) 準戶口	8
(二) 測量圖	4
五。 置簿・記錄類	5
(一) 執事分定記	5
(二) 笏記	4
(三) 其他記錄類	7
六。 書簡・通告類	9
(一) 簡札	9
(二) 告示	2
(三) 慰狀	9
(四) 通文	3
(五) 한글간찰	1
(六) 婚書	4
七。 詩文類	1
(一) 輓詞	4
(二) 上樑文	5
(三) 試券	1
(四) 祭文	8
八。 成冊古文書	2
(一) 「雜錄」	2
(二) 挽祭	2
(三) 哀感錄	3
(四) 採薇軒楔案	1
(五) 水溪書院田畝案	2
(六) 水溪書院田畝案	6
(七) 水溪書院田畝案	6
(八) 水溪書院田畝案	8
○ 梧峯家門 古文書	
一。 教令類	3
(一) 教令類	2
(二) 教令類	5

(一) 教書	3 2 5
(二) 有旨	3 2 7
(三) 告身	3 3 2
(四) 紅牌	3 7 3
(五) 白牌	3 7 4
(六) 追贈教旨	3 7 6
(七) 祿牌	3 7 8
(八) 差定帖	3 8 3
二。疏・劄・啓・狀類	3 8 4
(一) 所志類	3 8 4
三。證憑類	3 8 8
(一) 立後成文	3 8 8
(二) 準戶口	3 8 9
四。書簡・通告類	4 2 0
(一) 問安單子	4 2 0
(二) 婚書	4 2 1
五。詩文類	4 2 3
(一) 試券	4 2 3

六。成册古文書	4 4 9
(一) 齋舍完議	4 4 9
(二) 龜尾舊泷新粧都目	4 6 7
(三) 貞夫人趙氏不忘記	4 8 7
(四) 壬戌年終天錄	5 0 2
(五) 佳道谷耐葬位考位不忘記	5 1 0
(六) 黃蛇日錄	5 2 8
(七) 梧峯先生年譜草記	5 6 1
(八) 同道會案	5 9 6
(九) 梧峯手蹟	6 0 0
(十) 孤松手蹟	6 1 6
(十一) 先輩筆蹟	6 4 3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정일기(고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목 차

- 一. 머리말
 - 二. 가계구성(家系構成)과 사회·경제적 기반
 - 1) 내부령공파(內府令公派, 邑派)
 - 2) 봉주공파(鳳州公派, 龜派)
 - 三. 아주신씨가(鵝州申氏家)의 주요 고문서
 - 1) 내부령공파(內府令公派)의 주요 고문서
 - 2) 봉주공파(鳳州公派)의 주요 고문서
- 【부록 1】 호계가문(虎溪家門, 內府令公派) 세계도(世系圖)
 【부록 2】 호계가문(虎溪家門, 內府令公派)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부록 3】 오봉가문(梧峯家門, 鳳州公派) 세계도(世系圖)
 【부록 4】 오봉가문(梧峯家門, 鳳州公派)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一. 머리말

의성(義城)의 아주신씨가(鵝州申氏家)는 조선중기 이래 명망있는 가문으로 발돋움하여 지금까지 누백년 동안의 성장과 봉양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하여 왔

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읍파(邑派)라 불리는 내부령공파(內府令公派)와 구파(龜派)라 불리는 봉주공파(鳳州公派)는 의성읍과 봉양 구미리를 중심으로 세거하면서 많은 걸출한 인물과 전적을 남겼다. 이번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하게 된 의성 아주신씨편 『고문서집성』은 바로 이 두 가계가 소장하여 왔던 고문서들이다.

二. 가계구성(家系構成)과 사회·경제적 기반

아주신씨의 본관인 아주는 본래 고려말에 거제속현(巨濟屬縣)이었던 아주현(鵝州縣)⁽¹⁾을 말한다. 의성에 오랫동안 세거해 온 아주신씨는 아주현의 권지호장(權知戶長)이었던 영미(英美)의 후손들이다. 이들이 의성에 세거하게 된 것은 4세 윤유(允濡) 때부터이다. 윤유는 초명이 원유(元濡)로 고려말 관도관서검군기사(判圖判書兼軍器寺事)를 역임하였고, 일찍이 거창(居昌)에 세거하다가 상주(尙州) 망경산(望京山)⁽²⁾ 아래 지금의 의성군(義城郡) 단밀면(丹密面)으로 이주하면서 아주신씨의 의성 입향조(入鄉祖)가 되었다. 그의 아들 우(祐)는 고려말 전라도

(1) 현재는 거제시(巨濟市) 아주동(鵝州洞)으로 그 지명이 남아있다.
 (2) 망경산은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해발 499m의 산이다. 신윤유가 고려의 망함을 보고 애통해 하여 초하루 보름에 그 산에 올라가 개경을 바라보고 충절을 지켰다 하여 망경산이라고 하였다 한다. 뒤에 망경산(萬景山)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남아있다.

안렴사(按廉使)를 역임하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일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채 학문에 전념하였다. 효행이 지극하여 그가 살던 마을이 효자리(孝子里)가 되었고, 그의 효행이 『삼강행실록』에 실렸다. 지금의 의성군 단밀면 주선리(注仙里)에 그 효자비가 남아 있으며, 속암리(涑岩里)의 속수서원(涑水書院)에 제향되었다. 우는 광부(光富, 內府令公派)와 광귀(光貴, 鳳州公派)를 두었는데, 여기에서 음파와 구파로 나눠지게 되어 내부령공파는 음파로 봉주공파는 구파로 불려지게 되었다.

1) 내부령공파(內府令公派, 邑派)

내부령공파는 우의 장자 광부를 중시조로 하는 가계로서 의성 아주신씨가에서는 음파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광부대부터 의성읍에 세거하였던 것은 아니다. 윤유가 거창에서 의성군 단밀로 이거한 뒤로 우↓광부↓사렴(士廉)대까지는 상주 망영산 아래 단밀에서 살았다. 의성읍으로 이거한 것은 사렴의 아들 석명(錫命) 때이다. 윤유 이하 사렴까지의 묘소는 모두 단밀에 있고, 단지 사렴의 묘만 단밀에서 의성읍으로 이봉(移封)하였다. 이는 석명이 의성에 정착하여 그의 부의 묘를 세거지인 의성읍으로 천장(遷葬)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음파가 된 셈이다. (세계도는 【부록 1】 참조)

음파가 번창하게 되는 것은 석명의 증손인 원록(元祿, 1516~1576)으로부터인 것 같다. 원록은 호를 회당(悔堂) 또는 도암(陶岩)이라 하고 효자로 이름났다. 그의 형 원복(元福)과 더불어 8년간이나 지성으로 환(患) 중의 아버지를 간호하였고, 어머니를 위하여 연친곡(宴親曲) 8수를 지었다 한다. (3) 1615년(광해군 7, 을묘)에 정려(旌闥)되었다. 원록은 주세붕(周世鵬)에게 사사(師事)하였고, 퇴계(退溪)와 남명(南冥)에게 나아가 종유(從遊)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후진양성을 위해 장천서원(長川書院)을 설립하는 등 학문진흥과 향약실천에 힘썼다고 한다.

원록은 심(心, 1547~1615)과 흘(屹, 1550~1614)을 두었는데, 두 형제 모두 임진왜란 시 그들의 종질인 홍도(弘道, 1558~1611)와 함께 예안의 김해(金垓)의 진(義陣)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심은 사헌부 감찰을 지냈고, 흘은 좌승지를 증직받았다.

흘은 적도(適道)·달도(達道)·열도(悅道) 등의 3난을 두었다. 적도(1574~1663)는 호가 호계(虎溪)로 학문과 효행이 뛰어났다고 한다. 한강(寒岡) 정구(鄭逵)와 여현(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하로서 1606년에 진사가 되고,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

(3) 申元祿, 『悔堂文集』 참조.

으켜 상운도(祥雲道) 참방(察訪)에 제수되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최화를 주장하였고 군량을 마련하여 건원릉 참봉에 제수되었으며, 사은하고 돌아와서는 옥산면 금학동학소대(鶴巢臺)에 채미헌(採薇軒)을 짓고 채소와 고사리를 뜯으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읍과의 고문서 자료에 그러한 소이를 담은 『채미헌계안(採薇軒稭案)』이 있다.

달도(1576~1631)는 호를 만오(晩悟)라 하였는데, 월천(月川) 조목(趙穆)과 여현의 문인이다. 1610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정계가 혼란하여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1623년(인조 1) 5월에 명나라 회종(熹宗)의 등극을 기념하는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급제하였다. 그 뒤 문한(文翰)을 거쳐 1627년 사간원 정언(正言)에 이어 지평(持平)이 되었다. 이해 6월 병조판서 이귀(李貴)의 전횡을 배척하는 소를 올려 그의 미움을 샀으며, 부사직(副司直)으로 전보되었다. 1629년 사헌부 장령이 되었을 때, 내수사(內需司)가 진상을 과다하게 강요하는 폐단을 일소하도록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보다 앞서 1627년 정묘호란 때 윤황(尹煌)과 함께 적극적으로 최화론을 주장하다가 파직되었다. 후일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열노(1589~1659년)는 호가 나재(懶齋)로 또한 여현의 문인이다. 1624년(인조 2) 증광문과에 을과

로 급제하였고, 1606년(선조 39)에 진사가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인조를 호종하였다.

이듬해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예조정랑·사간원 정언을 거쳐 1638년 올진현감(蔚珍縣監)을 지내고, 1647년 사헌부 장령이 되어 민생에 대하여 상소하였고 뒤에 능주목사(綾州牧使)를 지냈다.

저서로 『선소지(仙笑志)』, 『문소지(聞韶志)』를 펴냈는데, 『문소지』는 『의성지』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들 3형제 모두 장여헌(張旅軒)의 문인으로 학문을 닦았으며, 나아가 종형제인 영도(泳道, 심의 자)와 적도의 자 채(採) 등도 모두 여현의 문인이었다. 이러한 학문적 연원으로 볼 때 이들의 학맥이 어디에 있었던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학문적 바탕에 더하여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규모를 지니고 있었던 듯하다. 이들 가계의 경제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고문서 중의 호적자료나 분재기(分財記)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 특히 적도가 그의 4남 5녀에게 분재하는 허여문기(許與文記)에서 볼 때 이 가계의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당시 17세기 중반의 재산상속제의 양상을 함께 추적해 볼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적도의 3남인 채(1610~1672)는 의성읍 팔지

(八智) 마을⁽⁴⁾의 입향조이다. 채의 호는 인재(忍齋)로 1646년(인조 24)에 성균관 진사가 되었다. 성균관에 수학할 때 문행이 뛰어나 영남의 삼모(三某)란 칭송을 들었으며, 구왕으로부터 성학십도명(聖學十圖銘) 제작을 명받기도 하였다 한다.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는 일절 나아가지 않고 오직 성리학 연구에만 전념하였다. 『인재문집(忍齋文集)』이 있으며, 단구서원(丹邱書院)에 배향되었다.

채는 우석(禹錫)과 문석(文錫)을 두었다. 우석은 덕윤(德潤)·덕해(德海)·덕위(德滄)를, 문석은 덕익(德益)·덕호(德浩)·덕순(德洵)을 두었다. 나아가 덕윤은 의모(義模)·덕해는 기모(器模)·덕호는 예모(禮模)·덕순은 정모(正模)를 두었다. 특히 덕순의 자 정모(1691~1742)는 호가 이치재(二恥齋)인데, 이인좌(李麟佐)난이 일어나자 거창현감으로 재임하면서 그의 노모를 안 전한 곳으로 먼저 피난시켰다고 하여 화근이 되었다. 이때문에 오랫동안 유배되어 결국 어머니도 모시지 못하였고, 나라에 충성도 하지 못하여 충과 효 두 가지 모두를 못한 부끄러움에 이치재라 자호하고, 오직 학문에만 힘썼

(4) 팔지(八智)마을은 처음에 「바지」라 불렀는데, 지금도 상팔(上八)을 웃 바지, 하팔(下八)을 아랫 바지라 부르고 있다. 현재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여덟 산봉우리에 성터가 있었다고 하여 팔봉(八城)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義城郡誌』, 1998. 참조.

다 한다. 1750년(영조 26)에 사면되었다.

아주신씨 읍파의 고문서 중 호적자료는 16세손인 덕윤의 준호구(準戶口)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21세손인 인협(寅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자료들을 통하여 이가계의 소유노비 규모 등을 살필 수 있어서 또한 분재기 등과 더불어 경제력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덕윤은 후사가 없어 그의 아우 덕해의 장남인 의모를 입후(立後)하였다. 덕해는 의모·기모·예모 등 3남을 두었는데, 장남은 큰대에 출계(出系)시켰고, 3남은 종제인 덕호에게 출계시켰다. 이러한 출계 과정에서 보면 대계적으로 작은대에서 큰대로 출계시킬 때는 장남을, 큰대에서 작은대로 출계시킬 때는 차남 이하를 보내게 되는데 이는 가계의 위치(位次)를 고려한 까닭에서이다.

의모는 종렬(宗烈)과 동렬(東烈)을 두었는데, 또한 종렬이 후사가 없어 동렬의 장남인 만교(萬敎)를 입후하였다. 아울러 동렬의 3남인 설교(雪敎)에게도 후사가 없어서 2남인 영교(泳敎)의 3자 면영(冕璟)으로 입후하였다. 이와 같이 형제와 종형제 사이에서 출계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 당시의 전형적인 출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만교는 면목(冕穆)·면구(冕九)·면일(冕一)을 두었고, 면목은 초명이 익조(翊朝)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조(國朝)→광조(匡朝)→면목 등 여러

차례 개명하였다. (5) 면목의 자 인협도 일협(駟協)에서 인협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인협의 자는 상하(相夏)이며 이계의 소지류(所志類)가 이때부터 나타나고 있다. 내용은 주로 투장(偷葬) 문제 등 산송(山訟)을 다룬 것이며, 제위담(祭位畓)의 징세(徵稅) 문제를 다룬 것도 있다.

읍과의 통혼관계에서 보면 대개 의성을 중심으로 한 인근 고을의 사주들과 인척을 많이 맺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성김씨(義城金氏)의 학봉(鶴峰) 집안이나 안동권씨(安東權氏), 영양남씨(英陽南氏), 함안조씨(咸安趙氏), 함양박씨(咸陽朴氏), 영천이씨(永川李氏) 등이 많았다.

이상에서 의성 아주신씨 읍과의 가계구성을 통하여 보았듯 이들 가계에서 중앙관직으로 진출한 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는 영남 남인들이 숙종(肅宗) 연간 중앙관계로부터 배제 당한 이후 더 이상 진출할 수 없었던 역사적 연유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 가계는 학문적으로 영남의 거유(巨儒)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향촌 사회의 학문진흥과 사회구난 등 오직 성리학적 질서에 따른 전통유지에 힘쓰고자 하였다. 따라서 의성을 중심으로 명망 있는 사족가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지닐 수 있었다.

(5) 신면목(申冕穆)의 준호구 참조.

2) 봉주공파(鳳州公派, 龜派)

봉주공파는 우의 차자 광귀를 증시조로 하는 가계이다. 봉주공파라 부르게 된 것은 광귀가 황해도 지봉주사(知鳳州事) (6)를 역임하였기 때문이다. 봉주공파는 내부령 공파인 읍파에 대하여 구파라 불리는데, 이는 이 가계가 의성 봉양면(鳳陽面)의 구미리(龜尾里)를 중심으로 대대로 세거하여 왔기 때문이다. 읍유↓우↓광귀↓희신(希信)↓건(乾)까지는 상주 관찰의 단밀(丹密) (7)에 세거하였다. (세계도는 【부록 3】 참조)

9세손 시생(始生) 때에 안동군(安東郡) 풍북면(豊北面) 정사동(鼎寺洞)으로 이주하였다가 10세손 개보(介甫) 때 비로소 의성군 봉양면 상리동(上里洞)으로 옮겼고, 14세손인 지제(之悌) 때에 현재의 봉양면 구미리에 세거하게 되었다.

구미는 면소재지인 봉양면 도이원(桃李院)에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서, 앞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남대천이 흐르고,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기슭 양쪽에 일단의 와가를 이루고 있는 아주신씨 집성촌이다. 신지제가 입학(入鄕)할 당시의 지명은 의성군 금뢰면(金磊面) 구장(龜

(6) 봉주(鳳州)는 황해도 봉산(鳳山)이다.
(7) 현재의 의성군 단밀면이다.

(8) 이었으나 마을 뒷산이 거북의 등과 꼬리모양을 한 채 남대천으로 흘러내리니 형상을 하여 구미로 바뀌었다 한다. (9) 현재 구미동에는 낙선당(樂善堂)과 신지채신도비(申之悌神道碑), 금산서원(錦山書院), 죽애정(竹厓亭), 감애정(鑑厓亭), 삼지당(三知堂), 창암정(蒼巖亭) 등 아주신씨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구미의 입향조 지제(1562~1624)는 자가 순부(順夫), 호가 오봉(梧峰)·오재(梧齋)로 증조는 증창(贈) 원관결사(翰)이며, 할아버지는 증공조참판 응규(應奎)이고, 아버지는 증좌승지몽득(夢得)이며, 어머니는 월성박씨(月城朴氏)로 민수(敏樹)의 딸이고, 부인은 함안조씨(咸安趙氏)로 지(址)의 딸이다.

일찍이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機)와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589년(선조 22)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601년에 정언(正言)과 예조좌랑을, 이듬해에 지평(持平)·성균관관전적(成均館典籍) 등을 거쳐 1604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문학(文學)·성균관 직강(直講)을 역임하였다.

(8) 구장을 일명 구호(龜湖)라고도 하였다.

(9) 『義城郡誌』, 1998. 참조.

지금까지도 구미리를 비롯한 구산리(龜山里), 화전리(花田里) 일대 마을은 아주신씨의 집성촌으로 신지제의 여러 후손들이 살고 있다.

1613년(광해군 5)에 창원부사로 나가 명화적(明火賊) 정대립(鄭大立) 등을 토포(討捕)하고 민심을 안정시킨 공로로 통정대부에 제수되었다. (10) 인조만정 초에 동부승지에 재배(除拜)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졸하였다.

효성과 우애가 도독하고 경사(經史)에 통달하여 유성룡(柳成龍)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예안현감으로 재직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해(金垓), (11) 광재우(郭再祐)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적을 토벌하였다. 이 공으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녹훈(錄勳)되었다. 그 공신록권(功臣錄券)이 전하고 있다.

저서로는 『오봉집(梧峰集)』이 있다. 1663년 장대리(藏待里) (12)에 후진양성을 위한 강당을 개설하였다. 그의 사후 그 자리에 그를 경모하기 위한 경현사(景顯祠)가

(11)(10) 이에 대한 교지(敎旨)와 교서(敎書)가 고문서로 남아 있다. 장필기, 『향명일기·매월일기』, 『과현일기』(한국사료총서 제 43상·하, 국사편찬위원회, 2000) 해제 참조.

김해는 본관이 광산(光山)으로 예안현 사람이다. 호를 근시재(近始齋)라 하며 퇴계 이황의 종질인 이재(李宰)의 사위가 되어 선조 43년 문과에 급제,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창의하여 경상좌도 의진(義陣)을 편성, 의병장의 추대되었다. 왜적을 추격하여 남하하다가 이듬해 개사년 6월 19일에 경주 전진(戰陣)에서 졸하였다. 그의 『鄉兵日記』는 바로 이때에 쓰여진 것으로서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안동, 예안, 예천, 의성, 상주, 영주, 봉화 등의 병참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2) 장대리는 구미리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다.

창건되었고, 이어 장대서원(藏待書院)으로 개칭하였다. 서원명은 당시 의성현령이었던 여헌 장현광이 「장기어신 대신이훈(藏器於身 待時而動)」이란 현관을 써서 내접으로 써 비롯되었다 한다.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근래에 증건되었다. 김광수(金光粹)·이민성(李民成)·신원록(申元祿)과 함께 그 서원에 배향되었다.

그의 아들 홍망(弘望, 1600~1673)은 자가 망구(望久), 호가 고송(孤松)으로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합격하고 강릉(康陵)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3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정언·전주판관·지평·풍기군수·울산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사헌부 지평으로 있을 때 도승지 이시매(李時樑)가 자못 패만(悖慢)한 것을 지평 이온발(李溫發)이 상주(上奏)하다가 탄핵되었는데, 이때 이시매가 자기의 옳음을 선현을 끌어들이며 증명하려 하였다. 이에 직접 그 소(疏)를 보고, 실로 모욕적이라 여겨 이를 단독으로 왕에게 진달하였다.⁽¹³⁾ 이것이 벌미가 되어 당론을 타파하고자 하는 마당에 호당(護黨)한다 하여 탄핵을 받고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두 달 뒤 풀려났다.

또한 1659년 풍기군수로 나갈 때 읍재(邑宰)가 연

(13) 『孝宗實錄』 권 9, 효종 3년 9월 병술.

달아 관청에서 죽자,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요망스러운 말을 없앨 수 없다.」 하고 부임한 뒤, 학교를 일으키고 교육에 힘썼다. 장여헌의 문인으로 학문에 뛰어났으며, 저서로는 『고송집(孤松集)』이 있다.

구과의 고문서 자료 중 호적자료인 호구단자·준호구 24점이 15세손인 홍망에서부터 24세손인 상기(相基)에 이르기까지 9대 동안의 것이 남아 있다. 이 가계의 경제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고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호적자료를 통해서나마 부분적으로 이 가계의 경제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호구단자·준호구에 따르면 지제·홍망대에 중앙과 지방관을 역임해서인지 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지역 일대와 멀리는 울산, 창원 등지에 이르러까지 전토 또는 노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홍망은 한노(漢老)·한걸(漢傑)·한백(漢伯) 등을 두었는데, 한노(1623~1676)는 학문에만 전념하여 일찍부터 과거에는 뜻이 없었다. 이에 그의 이종형인 이관징(李觀徵)이 여러 차례 관직에 나아가도록 권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관징(1618~1695)은 숙종 때 이조판서와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를 지낸 인물로⁽¹⁴⁾

(14) 김춘택(金春澤) 등이 숙종의 폐비 민씨의 복위운동에 일으킴으로써 노론과 소론 일파를 제거하려던 남인들이 오히려 참화를 당한 1694년의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앞서 1689년에 일어난던 기사환국(己巳換局) 때의 장계(狀啓)를 발의한 인물로 지목되어 삭출(削黜)되었다.

그의 어머니가 이민환(李民寬)의 딸로 한노에게는 이모가 되었다. 이민환(1573~1649)은 본관이 영천(永川)으로 관찰사 광준(光俊)의 아들이다. 장현광의 문인으로 서, 1600년(선조 3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영천군수 등을 역임하였고, 1618년(광해군 10)에 가홍립(姜弘立)의 막하로 출전하였다가 청군의 포로가 되었으나 항복하지 않았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영남호소사(嶺南號召使) 장현광의 종사관이 되어 출전하였고, 형조참판, 경주부윤을 역임한 인물이다.

한걸은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시 세운 공훈에 의하여 20세에 선무랑(宣務郎)에 승자(陞資)되어 의영고(義盈庫) 주부(主簿)를 역임하였다.

한노는 숙범(叔範)·숙보(叔寶)·숙정(叔筵)·숙호(叔箴)를 두었다. 숙범은 학봉의 현손서(玄孫壻)로 김시추(金是樞)의 손서(孫壻)이다. 이 가계 또한 음과와 마찬가지로 의성김씨 학봉 집안과 통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숙범은 분구(賁龜)·복구(復龜)·진구(震龜)·태구(泰龜) 등 4남을 두었다. 분구는 초명이 진룡이었으나 개명하였고, 복구는 호가 쌍벽당(雙碧堂)으로, 손수 마당에 두 그루 옹동나무를 심어서 당호를 그렇게 지었다는 아우 진구의 「쌍벽당기(雙碧堂記)」가 있다. 진구는 호가 죽에(竹厓)로 영조 무신년에 별시(別試)를 보기 위해 경성(京城)으로 향하다가 중도에 이인좌난의 소식을 듣고 직

산현(稷山縣)에 이르러 현재(縣宰)에게 방략을 일러줘 수성보영(守城報營)케 하고 돌아와서는 일문친족과 향인들을 거느리고 창의하였다.

병진년(영조 12, 1736)에 문묘에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을 종향(從享)하고자 하자 이를 배척하는 영남유소(嶺南儒疏)의 소수(疏首)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분구는 도삼(道三)·도구(道九)·도만(道萬)을 두었으며, 도삼은 중인(重仁)·근인(近仁)·호인(好仁)을 두었으나 호인은 당숙 도제(道濟)·진구의 아들에게 입후되었다. 도만은 체인(體仁)을 두었는데 호가 회병(晦屏)이다. 중형 중인이 29세에 요절하자 그를 회상하는 불망기를 남겼는데, 고문서 중에 『황사일록(黃蛇日錄)』으로 전하고 있으며, 체인이 쓴 중인의 묘표(墓表)에 그 내용 의 개략이 들어 있다. 특히 체인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장이 뛰어나고 퇴계학에 정통하였다 한다. 1776년에 구미리 금산(錦山)에 금연정사(錦淵精舍)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였다. 금연정사는 현재 금산서원(錦山書院)으로 복원되었다.

한노 이후 숙범→분구→도삼→중인(重仁)→정유(鼎沃)→조응(祖應)→희목(熙穆)→상기(相基)로 이어지는 이들 가계는 더 이상의 중앙관직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향촌사회 내에서 명망

있는 가문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특히 의성과 안동을 중심으로 의성김씨, 풍산류씨, 안동김씨, 안동권씨, 영양남씨, 풍양조씨, 한양조씨, 광산김씨 등 유수 가문과의 끊임없는 통혼관계로 통하여 이들 가계의 사회·신분적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

三. 아주신씨가(鵝州申氏家)의 주요 고문서

1 (내부령공파)內府令公派)의 주요 고문서

① 호적류(戶籍類)

이 가계의 호적은 모두 준호구(準戶口) 자료로서 턱운에서부터 인협까지 5대에 걸쳐 이루어진 40점이 남아 있다. 이는 【부록 2】로 첨부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1696년(강희 35)에 발급된 턱운의 준호구에는 총 37구의 노비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순천을 비롯하여 홍양·해남·안동·상주·경주·청도 등 전남과 경상도에 각각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홍양과 해남에 많았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도망노비로 되어 있으며, 구활노비(救活奴婢)도 들어있다. 그러다가 턱운이 61세 되던 해의 준호구에는 매득노비 등이 더해져 총 59구로 늘어나 있다. 의모와 종렬을 거쳐 택기(宅起)에게 전

래 되었는데, 택기는 1789년(건륭 54) 준호구에서는 만교(萬敎)로 개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때의 노비 수는 48구였다.

만교를 이어 그의 자 면목(冕穆)은 초명이 의조(翊朝)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개명을 하여 국조(國朝), 22세(↓광조(匡朝), 25세) ↓면목(31세)이 되었다. 그러나 의조의 준호구에 기재된 노비 수는 불과 4구뿐이었다. 이는 기존의 도망노비들을 기재하지 않은 결과라고 짐작된다. 이미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집에서 도망노비들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노비수의 급감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호구단자나 준호구 등에 아예 기재하지 않게 되었다.

회목은 22세 되던 해 노(奴) 정진(正辰)과 정진의 1소생 비(婢) 원심(元心, 願心), 원심의 2소생 손심(孫心) 등 3구를 박만금(朴萬金)에게 매수하였다.⁽¹⁵⁾ 그러나 정진과 손심은 도망하여 상주 내역(內驛)에 거주하게 되었고, 결국 남은 노비는 양역비(仰役婢)인 원심뿐이었다. 면목이道光 5년에 그의 아들 일협(駟協)에게 전래하였으나 일협이 요절하자 비 원심은 일협의 중부인 면구(冕九)에게 전래되었다. 일협은 개명하기 전의 인협이다.

(15) 상주목업안(尙州牧立案)이 첨부되어 있다.

② 소지류(所志類)

아주신씨 내부령공파 고문서 중의 소지류는 모두 7점으로 대부분 19세기의 것이다. 주로 투장(偷葬)과 금송(禁松)에 관한 것으로 단독으로 또는 연명하여 올린 것이다.

이들 소지 중에서 제위담(祭位畓)의 남징(納徵)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있는데, 계묘년(1903) 10월에 신상하(申相夏)·찬호(贊祜)·돈식(敦植) 등이 전래되어 온 제위담 6두락지에 대한 징세의 억울함을 경주군수검봉세관(慶州郡守兼捧稅官)에게 호소한 소지이다. 이 제위담은 본래 서원담(書院畓)이었는데, 포청(砲廳)에 빼앗겨 읍의 포담(砲畓)이 되었다가 포군(砲軍)이 혁파된 뒤에 빈무용지(無用地)로 남은 것을 군부(軍府)와 순영(巡營)에 보고하고 방매하는 공문을 보고서 매득하였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어사(御史) 조모(曹某)가 와서 이 담이 헐값에 방매되었다 하여 그 차액을 매 두(斗)에 10여 량씩 내어 공납하도록 하였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감영(大邱監營)의 오리(吳吏)와 순교(巡校)가 와서 매 두락에 4, 50량씩을 독촉하였고, 또 몇 개월 지나서는 갑자기 내장원(內藏院)에 속공(屬公)되어 돈을 내라하니, 이를 봉세관이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소지이다. 이에 대해 봉세관은 도조(賭租)의 가감은 색사(穢事)의 풍·불풍(豊·不豊)에 있으니, 영구히 정하는 것은 논의할 바가 아니다 하고, 그 판결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의 성주(城主) 패지(牌旨)에서 는 성주가 상고해보니 당초 담안(畓案)의 권순석이란 자의 신제원 3두락지 담이 잘못되었으니 도조를 마땅히 감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

③ 분재기(分財記)

조선시기의 분재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허여(許與)、화회(和會)、분급(分給)、분깃(分給)、허급(許給)、별급(別給) 등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쓰였다. 따라서 분재방식과 분재기의 종류는 재산을 나누어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또 그 시기가 재주의 생전인가 사후인가, 분재하는 재산이 재주의 재산 전체인가 부분인가, 재산을 물려받는 수급자가 어느 범위까지인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분배의 성격이 규정되어 지고 있다.⁽¹⁶⁾

아주신씨 내부령공파 소장의 분재기는 신적도(申適道)가 생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준 것으로서 하나의 허여문기(許與文記)이다. 적도는 집(堦)·관(均)·채(塚)·점(坵)의 4남⁽¹⁷⁾과 일녀(孽女) 둘을 포함하여 5녀를 두었다.

(16) 이에 대한 연구성과는 文叔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경인문화사, 2004) 참조.
 (17) 장남인 집은 종사랑(從仕郎), 차남인 균은 선교랑(宣敎郎), 3남 인제는 진사, 4남인 점은 선교랑이었다.

이 분재기의 앞부분은 산일되어 장남인 집의 분재 몫은 알 수 없고, 차남인 균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재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재주인 적도가 90세까지 장수하여 1663년(현종 4, 계묘)에 졸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 문기의 증필(證筆)인 적도의 아우 열도(悅道)가 1659년(효종 10, 기해)에 졸하였고, 같은 증인인 조카 균(圭)가 1656년(효종 7, 병신)에 졸한 것을 족보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생전이었던 1656년 이전에 분재가 작성되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장남인 집의 생전인지 아닌지는 이 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없다. 참고로 집은 1637년(인조 15)에 조졸(早卒)하였기는 균분상속제의 분재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대개 봉사조(奉祀條)는 16세기 중반 이후 장자 중심으로 집중되어 왔으며, 차등상속제 또한 17세기 후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볼 때 이 문기에서 봉사조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차녀에게 분재 몫을 주면서 「무후고지출사위(無後故只出祀位)」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윤회 봉사(輪回奉祀)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그러면서 딸들에게는 일종의 법전적 비율이 적용되었던 것 같다.⁽¹⁸⁾

(18)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에 따르면 분재시 양첩자녀(良妾子女)에게는 적조자녀(嫡婁子女)의 1/7을, 천첩자녀(賤妾子女)에게는 1/10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자녀들에게 분재된 재산 내용을 통계수치화해보면 표와 같이 나타난다.

수급자	분재 내용			비고
	전	답	노비	
차남 均	289부 9속 22.5두락지	67부 7속 38.5두락지	10구	
삼남 塚	340부 1속 37.5두락지	64부 5속 19.5두락지	10구	
말남 坵	313부 2속 21두락지	56부 3속 20.5두락지	11구	
장녀서 金尙珪	45부 9속 12.5두락지	37부 7속 5두락지	8구	
차녀서 鄭復亨	45부 8속 7.5두락지	17부 2.5두락지	3구	無後故只出祀位
말녀서 申命元	17두락지	10두락지	8구	
얼녀서 鄭再興	44부 2속 13.5두락지	43부 1속 8두락지	2구	
차얼녀서 金乃文	27부 3속	20부 4속 4.5두락지	1구	
계	1,106부 4속 131.5두락지	306부 7속 108.5두락지	53구	

④ 빙계서원전답안(氷溪書院田畵案)

빙계서원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에 있었던 서원으로 1556년(명종 11)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안국(金安國)·이인적(李彦迪)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1576년(선조 9)에 장천서원(長川書院)이라고 사액되었다가, 1600년(선조 33)에 이전하면서 빙계서원으로 개칭하였다.

1689년(숙종 15) 김성일(金誠一)·류성룡·장현광을 추가로 배향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충효사(忠孝祠)·명교당(明敎堂)·동재(東齋)·서재(西齋)·신문(神門)·전사청(奠祀廳)·주소(廚所) 등이 있었다. 하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1868년(고종 5)에 훼손되었다. (19)

이 전답안은 빙계서원이 서원전으로 소유하고 있던 전답기록으로서, 양식은 양안(量案)의 기재방식을 일부 준용한 것 같다. 토지대장인 양안은 국가가 토지의 등급·면적·소유자 등을 조사하는 양전(量田) 사업을 통하여 그 토지가 지니고 있는 자호(字號)와 지번(地番), 비옥도에 의한 등급, 토지의 모양새, 토지면적, 사표(四標), 토지 소유주 등을 조사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수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19) 『列邑院宇事蹟』, 『慶尙北道史』(慶尙北道, 1983) 참조.

따라서 양안의 기재가 상당히 정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토지의 자호와 지번은 그 토지의 행정구역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호는 대개 천자문 순으로 매겨졌고, 한자호 내의 매 필지는 양전 순서에 따라 지번이 붙여졌다. 이어 측량하는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표기하고, 그 토지의 등급을 매겼다. 이때 비옥도에 따라 1~6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결·부·속(結·負·束)이라는 면적 단위를 이용하여 결부를 책정하였다.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 세를 부과하였다. 대개 18~19세기 정도에는 1부에 1두의 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의 모양새는 보통 반듯한 직전(直田), 직답(直畓)으로 많이 표기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전(梯田), 구전(句田), 방전(方田), 규전(圭田) 등으로 표기하여 삼각형, 정사각형, 마름모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토지의 면적은 동서장(東西長), 남북광(南北廣)이나 남북장(南北長), 동서광(東西廣)으로 하여, 가로 세로의 길이를 척(尺)으로 표기하였으며, 한 필지에 대한 사방의 경계를 사표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의 소유주를 경작 중인 땅이면 기주(起主), 묵히는 땅이면 진주(陳主)로 나타내었다.

대개 이 같은 기재 방식에 의하여 양안이 작성되었는데, 빙계서원전답안은 바로 이 같은 양안의 기재 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즉 토지의 구획명과 자호, 지번을 기록하

고, 이어 등급과 토지 모양새, 지목을 기록한 다음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로·세로의 길이를 장·광 몇 자로나 타내고 이를 결부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起)와 진(陳)이나 사경(私耕) 등을 부기하였다. 이 전답안은 파손으로 부분적인 결락이 있기는 하나 빙계서원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채미헌계안(採薇軒稷案)

채미(採薇)에 대한 고사는 백이·숙제(伯夷·叔齊)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은(殷)나라 고죽국(孤竹國)의 양자였던 백이·숙제가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후계자 되기를 사양하다가 끝내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떠났다. 그 무렵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의 주왕(紂王)을 멸하고 주왕조를 세우자, 두 사람은 무왕의 행위가 인의(仁義)를 반하는 것이라 하여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죽었다. 그 뒤부터 청절지사(淸節之士)를 주로 채미 고사에 비겨 말하였다.

그러나 이 채미헌은 백이·숙제의 그러한 뜻에 비겨서 이름한 것이 아니라, 정묘호란 시 영남의병장을 역임하던 호계 신적도가 병자호란 때에 다시 창의한 뒤 의성의 학소대(鶴巢臺)에 모헌(茅軒)을 짓고 채소를 키우고 고사리를 뜯어 자족하며 곤경을 맞이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이

름이었다. (20)

그 뒤 고종 병자년(1876)에 향리의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 단구(丹邱)에 이 건하였는데, 채미헌계안은 바로 이러한 당초의 뜻을 이어받고자 만든 계안으로서, 1917년(정사) 11월에 발기한 것으로 되었다. 채미헌계안의 좌목에 기록된 인원은 총 467인으로 의성의 아주신씨를 비롯하여 인근 향리의 여러 성씨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계가 발족한 일제시기에는 각종 계가 성행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식리(殖利), 식산(殖産)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 계였다. 이 같은 계는 어떤 면에서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상품 시장화 하여 식민지적 상업자본주의에 이용하고자 한 면이 강하였다. 그런데 비하여 이 채미헌계안은 절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안의 제영(題詠)에 나타나는 뜻으로 볼 때 상호부조보다는 선현의 정충(貞忠)과 충절(忠節)을 기리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던 것 같다.

끝장에 「인재종가장(忍齋宗家藏)」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재는 바로 채미헌을 세운 호계의 제3자 채이다.

⑥ 애감록(哀感錄)

정조 6년 임인(1782) 생인 면구의 초상일(初喪日), 칠종 4 계축 9월 초3일, 1853)과 소상일(小祥日)

(20) 『鵝州申氏世獻』, 採薇軒移建記 참조.

인 이듬해 갑인년 9월 초 3일, 대상일(大祥日)인 을묘년 9월 초 3일에 기록된 조의록으로 신씨 종종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친분이 있는 여타의 성씨들도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기록은 재미한계안과 더불어 향리의 문중조직과 친교 관계를 살피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2) 봉주공파(鳳州公派)의 주요 고문서

① 교서(敎書)

교서는 국왕의 내리는 명령서·훈유서(訓諭書)·선포문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이를 황제가 내릴 때에는 조서(詔書) 또는 칙서(勅書)라고 하고, 왕세자가 대리칭정시 내릴 때는 영서(令書)라고 하였다.

교서도 그 내리는 성격에 따라 즉위교서(卽位敎書)·구언교서(求言敎書)·공신녹훈교서(功臣錄勳敎書)·배향교서(配享敎書)·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반사교서(頒敎敎書)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외에도 사여(賜與)·권농(勸農)·사명훈유(使命訓諭)·봉작(封爵)·책보(冊封)·가례(嘉禮)·납징(納徵)·포장(褒獎) 등의 교서가 있다. 교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 또는 칭문을 거친 뒤 반포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서는 개인에게 내려진 공신교서나 사명훈유교서 등이 일

반적이다.

신지제(申之悌)의 교서는 1617년(광해군 9) 5월 12일에 창원부사였던 신지제에게 명화적 정대립 등을 체포한 공로를 기린다는 뜻으로 내려진 공신교서이다.

이 교서의 형식은 일반 교서와 다를 바 없이 「敎具銜姓名書 王若曰云云...故茲敎示想宜知悉 年號某年某月某日」이라고 하는 형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즉 「敎昌原府使申之悌明火作賊鄭大立等盡心跟捕賞加書」라 하고, 왕약왈 운 이라고 하여 명화적 정대립 등을 잡은 공로로 통정대부 직(通政大夫職)을 내린다는 내용을 적고, 교서의 마지막에 연호와 연일일을 적은 다음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이 같은 절차는 조정의 논상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21) 교서를 내리기에 앞서서 5월 초 6일에 통정대부를 더하는 교지가 내려졌었다. (22)

② 고목(告目)

보통 고목은 각사(各司)의 서리 및 지방관아의 향리가 상

(21) 『光海君日記』 권 115, 광해군 9년 5월 정묘. 「刑曹啓曰、洪州牧使 尹義立、明火作賊 僧景栗、信川郡守 任碩齡、明火作賊 僧宏侃、昌原府使 申之悌、明火作賊 鄭大立、盡心捕捉、極爲可嘉、論賞事上裁。啓、并加資。」

(22) 신지제의 통정대부 가자(加資) 교지로, 만력 45년(1617) 5월 초 6일자에 발급된 「明火作賊鄭大立等盡心跟捕極爲可嘉加資事承傳」 교지가 있다.

관에게 공무를 보고하거나 문안할 때 올리는 것을 이르나, 지방관의 하관이 상관에게 올리는 것을 이르기 도 한다.

봉주공과 전래의 이 고목은 신흥망이 울산도호부사로 차임되어 갈 때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에게 부임을 신고한 문서이다. 이는 울산부사로서 경주진관 병마동첨절제사를 겸하였기 때문에 진관체제 하에서는 병사의 하관으로서 지휘를 받아야 하였기 때문이다.

진관체제란 조선시대 지방 군사조직으로, 내륙 요지에 진(鎭)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군사조직 체계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모든 수령은 병마직(兵馬職)을 겸하게 되었다. 각 도에는 병마절도사가 주진(主鎭)에 있으면서 도내 각 진관의 육군·수군에 대한 군사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또 아래 거진(巨鎭)에는 부윤·목사·부사가 절제사·첨절제사 등을 겸하면서 군사 조직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말단의 진은 군수·현령·현감 등이 동첨절제사·절제도위 등을 겸했고, 특수 지역에는 만호를 두었다.

그러나 병마절도사의 수는 지역의 중요성에 따라 각 도마다 일정하지 않았다. 경상도는 3인의 병마절도사가 있었는데, 1인은 관찰사가 겸하고 나머지 2인은 좌우로 나누어 전담 무장이 담당하였다.

경상도는 상주와 울산에 각각 주진이 있어서 그 이하의 거진과 제진(諸鎭)이 각각 좌·우병사의 지휘 통솔을 받

아야 하였다. (23) 따라서 울산부사 신흥망은 자신의 상관인 병사에게 이 같은 신고절차를 치러야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通訓大夫行蔚山都護府使慶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申弘望狀以
長子執言說

廣制閫之責

將軍司命感仰

伏鍋之椎十里威聲一方精彩伏惟

兵馬節度使相國閣下臣甫文武節制書

樽俎折衝玉塞之干戈永戢士卒用命金城之方略得宜海宇塵清并服心慄伏念弘望才疎製

錦政拙惟奉以周旋勉竭牧務之任當此鈴轄庶助廓濟之威不勝戰懼之至

順治十四年二月日 通訓大夫行蔚山都護府使慶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申(署押)

③ 호적류(戶籍類)

봉주공과의 전래 호적류는 24점으로 15세 홍망에서부터 24세 상기에 이르기까지 9대에 걸쳐 이어진 대부분의 준호구이다. 준호구에 기재된 이 가계의 전래 노비를 보면 제일 많은 시기가 도망노비를 포함하여 125구

(23) 진관체제 편성에서 경상도의 진관은 다음과 같다.

- 主鎭.. 尙州 蔚山.
- 巨鎭.. 安東 大丘 尙州 晉州 金海 釜山浦 薺浦.
- 諸鎭.. 蔚山 梁山 永川 興海 寧海 靑松 醴泉 榮川 豐基 星州 善山 金山 陝川 草溪 咸陽 昆陽 昌原 咸安 密陽 淸道 豆毛浦 甘浦 海雲浦 漆浦 包伊浦 烏浦 西生浦 多大浦 鹽浦 丑山浦 玉浦 平山浦 知世浦 永登浦 蛇梁 唐浦 助羅浦 赤梁 安骨浦 淸河 迎日 長坵 機張 東萊 彥陽 義星 奉化 眞寶 軍威 比安 禮安 盈德 龍宮 星州 開寧 知禮 高靈 聞慶 咸昌 居昌 泗川 南海 三嘉 宜寧 河東 山陰 安陰 丹城 巨濟 漆原 鎭海 固城 熊川 慶山 河陽 仁同 玄風 義興 新寧 靈山 昌寧.

정도이고 상기대에 가서는 겨우 10구 정도 유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양상은 또한 조선후기의 사회변화와 더불어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다.

홍망은 울산부사, 강원도 도사, 승문원 판교 등을 역임하였는데, 그의 나이 67세가 되던 1666년(강희 5)의 준호구에 의하면 기재된 노비가 45구였다. 이는 도망노비와 가현노비(加現奴婢)를 포함한 숫자이다. 1675년(강희 14)에 그의 손자 숙범(叔範)이 홍망에게서 전래받게 되었고, 뒤에 많이 늘게 되어 강희 38년 숙범의 준호구에 의하면 총 107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이 도망노비의 추심이나 매득에 의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이때 노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분포를 보면 하천(下川), 이혜(泥兮), 소문(召文), 선산(善山), 우곡(羽谷), 의흥(義興), 안동(安東), 성주(星州), 금산(金山), 칠곡(漆谷), 안평(安平), 강릉(江陵) 등으로 의성을 비롯한 경부일대이다.

대체로 이러한 수준에서 숙범 ↓ 분구(賁龜) ↓ 정오(鼎五) ↓ 면복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특히 정오대에는 최대 125구가 준호구상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분포 지역을 보면 앞의 숙범대에서 보여 준 경북 일대를 포함하여 인동(仁洞), 상주(尙州), 청송(靑松), 영덕(盈德), 연일(延日), 진보(眞寶) 등의 지역들이 새롭게 보이고 있으며, 거창(居昌), 김해(金海), 양산(梁山) 등 경남 지역의 일부분과 경기 수원(水原)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노

비거주의 지역 분포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이들 대부분이 도망노비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 도망노비의 거주지 파악은 되고 있었지만, 추쇄는 어려웠던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면목을 이어 상기대에 오면 결국 도망노비의 기재조차 준호구에서 빠져버리는 실상이었다.

④ 입후표문(立後標文)

입후(立後)란 자식이 없는 사람이 동종(同宗)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뒤를 잇게 하는 것으로, 두 집안이 합의문서를 만들어 관에 고하고, 예조의 확인철차인 입안(立案)을 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식적인 효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후 과정에도 과양(罷養)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도 있었다. 이를테면 동종의 맏아들로서 남의 뒤를 잇게 하는 경우나 한쪽 부모가 모두 죽은 경우에는 입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든가, 남의 양자가 된 자의 생가 부모가 무후(無後)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과양하여 생가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등이다.⁽²⁴⁾

봉주공과의 이 입후문서는 22세 종손인 조응(祖應)이 1804년(순조 4) 11월 30일에 후사가 없이 죽자, 이에 이듬해 정월 8일에 단성에 있는 종족(宗族) 조호(祖祔)의 셋째 아들인 회복을 종손으로 입후하는 과정을 기록한 표문이다.

(24) 『大典會通』 禮典 立後條 참조.

夏期에는 中米 1석, 糙米 4석, 小麥 1석, 正布 1필을 지급한다.

秋期에는 中米 1석, 糙米 3석, 田米 1석, 小麥 2석, 正布 2필을 지급한다.

冬期에는 糙米 4석, 黃豆 2석, 正布 1필을 지급한다. 이상은 12일이 지급일이다.

⑥ 재사완의(齋舍完議)

완의(完議)는 증중이나 가분 또는 계(契) 등에서 제사나 묘위(墓位)·계사(稷事)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항을 기록하여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아주신씨 봉주공파의 이 완의는 신숙범·숙보·숙연·숙호의 4형제에 대한 제사를 후손들이 잘 지켜 나가자고 약속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전체 1책 16장으로, 서문은 봉사손(奉祀孫)인 분구가 썼으며 증형제들과 더불어 선고형제(先考兄弟)의 봉사를 위하여 쓴다고 하였다. 작성시기는 1717년(숙종 43, 정유) 10월 그믐날이다. 그 다음에 「영원(鵠原)」이라 하고 봉사 대상자인 숙범 등 4형제를 기록하였다. 영원이란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로서 형제가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형제를 향연하는 시에 쓰였다. (26)

(26) 『詩經』 小雅, 常棣. 「鵠鵠在原, 兄弟急難」에서 나온 말로 형제를 향연하는 시이다. 주나라의 관숙·채숙(管叔·蔡叔)의 실도(失道)를 가없이 여기어 주공(周公)이 지었다고 한다.

이러 실질적인 제사를 위한 약속을 절목으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네 집이 돌아가며 행하며, 제담(祭壇) 소출이 많게는 40석에 이르니 뒤에 그 윤차(輪次)를 따라서 제수로 쓰고 1위(位)에 2석에 한하여 출급하는 일, 유(油)·청(淸)·면(麪)·미(米)·과물(果物) 준비, 정월 8일의 제사는 고비(考妣)의 제사와 겹치므로 기본 2석에다 1석을 더하는 일, 제사에 맞춰 출급하지 않으면 공한 집은 미리 끝어다 쓰는 근심이 있으므로 유사(有司)가 헤아려 지급할 일, 유사는 매년 개체(改遞)하며 네 집이 돌아가며 맡을 일, 기본 2석을 출급하고 남은 곡식은 모아두었다가 정 쓸 일이 없으면 논을 사서 뒷날을 준비할 일, 후 남은 곡식은 곡식으로 솔이나 재기를 사다가 네 집이 돌려가며 내어다가 쓰게 하고, 상사(喪事)시에는 형제간의 우의가 있어야 한 즉, 양상(兩喪)에 한하여 5석을 출급하고, 자손의 상사에는 허급하지 않을 일, 그리고 유사가 부지런하지 않을 때는 일가가 회의하여 그 정중에 따라 벌한다는 내용들이다.

그 뒤 1758년(영조 34, 무인) 12월에 성구(聖龜)가 추정약조(追定約條)를 더하여 종계(宗契) 창설 당시의 절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하였다. 따라서 처음의 9조목이던 것이 20조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후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선현 봉사에 해이해지는 문중원들의 기강과 유대를 다진다는 의미가 깊었다. 추정석에서 유사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여 잘못이 있을 때는 중

별로 다스린다는 조목이나, 자손이 신병이나 산사(産事) 외에 이유 없이 선대 제사에 불참하면 태벌(笞罰)로써 다스린다는 조목 등에서 그러한 면모를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모대(帽帶)나 남녀 예복은 종가에 두되 친족 계원이 아니면 비록 외손 집안이라도 일체 빌려주지 말도록 하였다. 따라서 계원인 경우는 계중(契中)에서 그 사례를 판단하여 빌려주되 대여료 5전(錢)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서 보듯이 18세기 이후의 친·외족간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대한 양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⑦ 구미구보신장도목안의(龜尾舊泮新粧都目完議)

구미구보(龜尾舊泮)는 신지체가 구미에 입향하여 세거하게 되면서 마을의 몽리담(蒙利菴)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할 뜻으로 길부촌(吉夫村) 앞에 축조한 보이다. 이 보의 완성으로 인근 7~8개 동의 농장에 관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의 관리는 아주신씨 문중에서 주관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도감(都監)하되 타성(他姓)은 허락하지 않았다. 애초에는 임역(立役)이나 수세(水費)가 전혀 없었으나 기유년 이후 신씨 종가에서 수세하게 되어 1두락 당 5량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 보 중에 있는 경작자들이 일제히 회합하여 구보 도목(都目)을 추심한 뒤 경술년 9월에 새로 조약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비록 신씨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임역

과 수세를 내도록 한다는 완의이다.

이 완의는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 완의하는 목적을 기록하였고, 이어 상·중·하고(上·中·下庫)로 구분하여 보 중의 작자와 경작 면적을 나열하였다. 머릿단에 담주(番主)를 쓰고 다음 단에 몇 배미(夜味) 몇 두락지(斗落只)로 경작 면적을, 마지막 단에는 경작자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 경작자가 바뀔 부분은 침지를 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보 중의 상·중·하 전체 경작 면적은 총 427두 4승락지(升落只)였다. 덧붙여 이 보를 지키는데 공이 있었던 천동(泉洞) 강세원(姜世元) 증조의 업적을 기록하였다. 즉 이 보 안에 어떤 경궁인(京宮人)이 새로이 축보(築泮)하려는 것을 강세원 증조가 홀로 여러 차례 관에 상서(上書)하여 쌓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다. 이어 조약 절목 11조를 기록하고 있다.

조약 내용은 보주(泮主)인 신씨들노 각 마을의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임역수세해야 하며, 도감은 타성에 서 뽑고, 송침방천(松浸防川)이 1년 중의 제일 큰 역인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송가(松價) 1전과 군정조(軍丁條) 1전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 안의 두수(斗數) 중 태반이 감고배(監考輩)들이 사사로이 낭비하였는 데 이를 바로 잡고, 상고는 5두락지 당 1명, 중고는 10두락지 당 1명, 하고는 15두락지 당 1명씩을 임역하도록 하였다. 임역할 때 두수에 차지 않는 1명에게

는 가물(價物)을 준비하여 내도록 하되 백주(白酒)나 대전(代錢) 4전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에는 7삽(鍤)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5삽이 되어 군정수가 25명이 됨으로써 두수가 전에 비하여 반감되었고, 백주도 5분(盆)이 되었는데 이를 대전 4전에 비겨 4분만을 내고 1분을 거절하면 관에 고하여 엄징(嚴懲)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 보 중에 양산금송(養山禁松)하여 방천(防川)에 쓰고 자 하는데, 중간에 보벌(浹法)이 해이하여져 간혹 인반(隣班)이 이를 어기고 빼앗는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으면 관에 고하여 엄처하는 일, 상하 작자(作者) 중에 이러한 조약을 어기는 자는 자답(自責)이면 관에 고하고, 반분작자(半分作者)는 답주에게 징계하도록 하여 해당 기간 휴역(訖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여러 조약 끝에 관으로부터 서압(署押)을 받아 공증하였다.

㉔ 동도회안(同道會案)

내제(內題)는 「제영남동도회제명권(題嶺南同道會題名卷)」으로 서울에서 베풀하는 영남인들이 친목을 다지고자 만든 제명록이다. 1601년(선조 34) 추7월에 장악원(掌樂院) 새 청사에 26인이 모여 제명록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때 좌장이 되는 서천(西川) 정곤수(鄭琨壽)는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나이순으로 제명하여

그를 맨 앞에 기록하니 상애지정(相愛之情)을 다진다고 하였다. 그 이듬해인 임인년 맹추(孟秋)에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이 쓴다고 하였다.

정곤수를 포함하여 제명록에 등재된 27인은 다음과 같다.

보국승록대부 정곤수, 성균관사 이호민, 호조참판 진양군(晉陽君) 강신(姜紳), 충좌위 부호군 강연(姜縵), 군자감 정윤엽(尹暉), 훈련원 첨정 박응립(朴應立), 예조정랑 지제교 신지제(申之悌), 의위사 의위 강담(姜統), 울산도호부 판관 김택용(金澤龍), 사헌부 감찰 권경호(權景虎), 성현도 칼방 유중용(柳仲龍), 증림도 칼방 전우(全雨), 전 황간현감 오극성(吳克成), 전 청산현감 이홍발(李弘發), 창녕현감 박광선(朴光先), 전 장기현감 권세인(權世仁), 사재감 주부 권순(權淳), 용양위 부사과 김혜(金惠), 선공감 직장 노도형(盧道亨), 승문원 저작 이민성(李民成), 교서관 저작 권제(權濟), 선공감 봉사 신경의(申景翼),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 이민환(李民寔), 광흥창 부봉사 조정(趙靖), 재용감 참봉 조우인(曹友仁), 승문원 부정자 남복규(南復圭) 등이다.

지역별로는 상주가 8인으로 가장 많고, 함창(咸昌) 4인, 군위(軍威) 3인, 영해(寧海)·단성 각 2인, 의성·성주(星州)·예안(禮安)·거창(巨昌)·초계(草溪)·금산(金山)·고령(高靈)·안동이 각 1인이었다.

◎ 불망기(不忘記)

· 정부인조씨불망기(貞夫人趙氏不忘記)

이 불망기는 신지제의 처 정부인 함안조씨(咸安趙氏)의 상을 당하여 자 홍망이 기록한 것이다. 표지에는 「천계 정인년 종천록 정부인조씨불망기(天啓 庚寅年 終天錄 貞夫人趙氏不忘記)」로 되어 있다.

조씨는 1563년(명종 18, 계해)에 태어나서 1650년(효종 1, 경인)에 졸하여 88세를 수하였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장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650년은 천계(天啓) 연간이 아니라 명나라 영력(永曆) 4년이거나 청나라 순치(順治) 7년이다. 아마도 이러한 연호를 쓰지 않기 위하여 명의 회종(熹宗) 연호인 천계를 쓴 것 같다. 1책 14장으로 홍망이 그의 어머니 조씨의 상사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 같다.

내용은 조씨가 무자년 진주 임소(任所)에서 (27) 한열지증(寒熱之症)이 있어 점점 심하여 지다가 경인년 정월 초 2일에 증세가 심하여져 초 8일에 상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 뒤에 습용의복(襲用衣服), 소림의금(小殮衣衾), 대림의금(大殮衣衾), 치관(治棺), 장산(葬山), 산즉호상(山卽護喪), 부물(賻物), 만장(輓章) 등의 순서로 일련의 상례 과정을 기록하고 부의록(賻儀錄)과 만장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기록하였다.

(27) 이때 신지제가 전라 도사(全羅 都事)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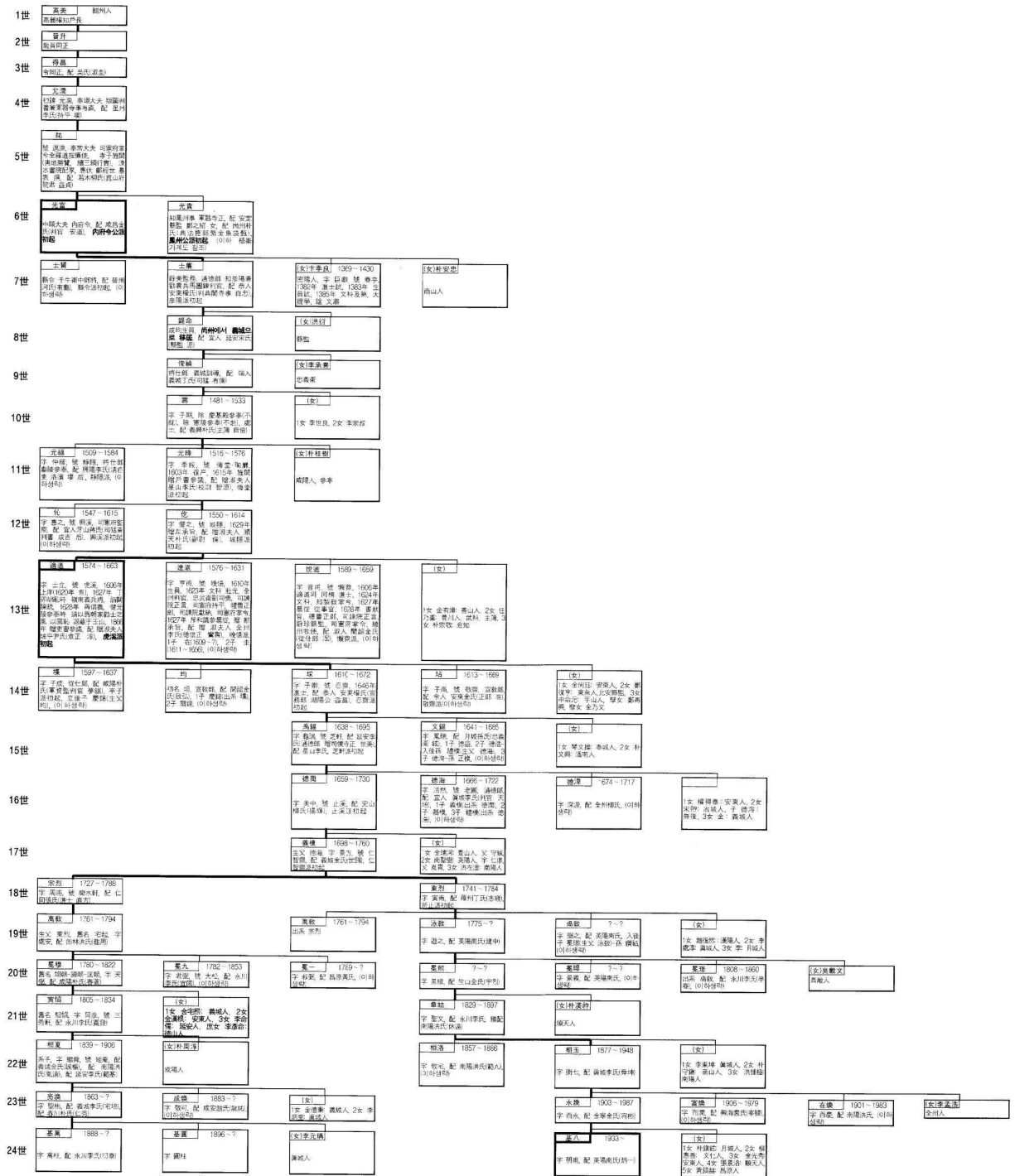
· 고위불망기(考位不忘記·佳道合祔葬位)

신분구(1677~1745)의 상사를 당하여 그의 자 도삼·도구·도만 중 어느 누가 기록한 것으로, 내표지에 「을축년위장록(乙丑年慰狀錄)」이라 하여 조문객들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분구는 을축년 2월 19일 69세로 졸하였다. 조문한 이들의 지역분포를 보면 의성·인근·마을을 비롯하여 상주·영천·경주·양동·제천·인동·성주·선산 등 다양하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 오는 조문객들은 단체로 특정 성씨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 향촌 사류의 친교관계 등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1책 16장이다.

· 인술년종천록(壬戌年終天錄)

신분구의 상사 시에 그 내력과 준비절차 및 상례 과정을 기록한 불망기이다. 선군(先君)이 임술년 5월 24일에 갑자기 한기(寒氣)와 두통, 요통, 사지통이 있었는데 6월 초 4일에 졸하였다는 내용과 그 뒤에 습구(襲具), 소림구(小殮具), 대림구(大殮具), 관판(棺板), 개빈(改殯), 칠(漆), 장산(葬山), 혈심(穴深), 석회(石灰) 등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이어 분구의 셋째 사위인 유재춘(柳載春)의 제문과 장사시의 부조 내용을 기록하였다. 1책 7장이다.

[부록 1] 호계가문(虎溪家門, 內府舍公派) 세계도(世系圖)



申宗烈 | 南部
統 第

【부록 2】 호계가문(虎溪家門, 內府令公派)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1. 教令類

문서명	순번	연 대	발급	수취	문서 내용	규 격	수록면
白牌	1	1646(仁祖24)	仁祖	申埰	○進士 3等 第10人 入格	94×44	3

2. 疏·劄·啓·狀類

문서명	순번	연 대	발급	수취	문서 내용	규 격	수록면
所志類	1	1846(憲宗12)	申冕璿 等	城主 (義城縣令)	○金磊面 物閑里 後洞에 있는 高祖父 墳山の 禁養之地에 대한 偷伐 嚴斷	60×64	4
	2	1846(憲宗12)	申冕璿·申冕琦 等	城主 (義城縣令)	○南部面 下八智 案山에 있는 高祖母 및 兄嫂의 墳山에 대한 偷葬之弊	105×62	6
	3	1872(高宗9)	申相夏 等	城主 (義城縣令)	○金磊面 物閑里 後洞에 있는 6代祖考 및 累代 墳山에 대한 偷葬之弊	84×54	7
	4	1873(高宗10)	申相夏	城主 (義城縣令)	○偷葬의 弊와 掘移 요청	78×59	8
	5	1898(光武2)	申相夏·申相衡·申纘祐 等	城主 (義城縣令)	○安平面 新洞外谷에 있는 7代祖 墳山の 禁養之地에 대한 偷伐 嚴斷	68×60	10
	6	1903(光武7)	申相夏·申纘祐·申敦植 等	行慶州郡守 兼捧稅官	○作吏들에 의한 砲番屯稅의 痼弊가 先祖祭位畵에 미침	58×39	11
	7	1903(光武7)	申相夏·申相憲·申纘祐 等	城主 (義城縣令)	○作吏들에 의한 砲番屯稅의 痼弊가 先祖祭位畵에 미침	68×59	13

3. 明文·文記類

문서명	순번	연 대	발급	수취	문서 내용	규 격	수록면
分財記	1	17世紀中葉	財主 申適道	申埰, 申均 等 男妹	○衿給文記	50×170	15

4. 證憑類

문서명	순번	연 대	발 급	수 취	문 서 내 용	규 격	수록면
準戶口	1	1696(肅宗22)	行縣令 (義城縣令)	申德潤	○南部 八智里 第2統 第2住戶 幼學 申德潤 戶	50×52	18
	2	1702(肅宗28)	行縣令 (義城縣令)	申德潤	○南部 八智里 第3統 第2住戶 幼學 申德潤 戶	50×70	19
	3	1708(肅宗34)	行縣令 (義城縣令)	申德潤	○南部 下八智里 第1統 第○ 住戶 幼學 申德潤 戶	49×59	20
	4	1711(肅宗37)	行縣令 (義城縣令)	申德潤	○南部 下八智里 第1統 第1住 戶 幼學 申德潤 戶	46×67	21
	5	1714(肅宗40)	行縣令 (義城縣令)	申德潤	○南部面 第12 下八智 第1統 第3住戶 幼學 申德潤 戶	49×57	22
	6	1718(肅宗44)	行縣令 (義城縣令)	申德潤	○南部面 第12 下八智 第1統 第1住戶 幼學 申德潤 戶	47×69	23
	7	1720(肅宗46)	行縣令 (義城縣令)	申德潤	○南部面 第12 下八智里 第1 統 第1住戶 幼學 申德潤 戶	50×66	24
	8	1735(英祖11)	行縣令 (義城縣令)	申義模	○南部面 第12 下八智里 第1 統 第1住戶 幼學 申義模 戶	50×80	25
	9	1766(英祖42)	行縣令 (義城縣令)	申宗烈	○南部 12 下八智里 第 統 第 戶 幼學 申宗烈 戶	52×67	26
	10	1774(英祖50)	行縣令 (義城縣令)	申宗烈	○南部面 第13 下八智里 第1 統 第3住戶 幼學 申宗烈 戶	52×70	27
	11	1777(正祖1)	行縣令 (義城縣令)	申宗烈	○南部面 □·……·□ 幼學 申宗烈 戶	50×82	28
	12	1780(正祖4)	行縣令 (義城縣令)	申宗烈	○第 戶 幼學 申宗烈 戶	42×84	29
	13	1783(正祖7)	行縣令 (義城縣令)	申宗烈	○南部 第13 下八智里 第2統 第2戶 幼學 申宗烈 戶	42×117	30
	14	1789(正祖13)	行縣令 (義城縣令)	申萬教	○南部面 第13 下八智里 第1 統 第2戶 幼學 申宗烈 故代 子 宅起 改 萬教 戶	32×64	32
	15	1792(正祖16)	行縣令 (義城縣令)	申萬教	○南部面 第13 下八智里 第1 統 第2戶 幼學 申萬教 戶	40×49	33
	16	1795(正祖19)	行縣令 (義城縣令)	申翊朝	○南部面 第13 下八智里 第2統 第2戶 幼學 申萬教 故代子 翊 朝 戶	42×40	34
	17	1798(正祖22)	行縣令 (義城縣令)	申翊朝	○南部面 第13 下八智里 第2 統 第1戶 幼學 申翊朝 戶	42×37	35
	18	1801(純祖1)	行縣令 (義城縣令)	申國朝	○南部面 第13 下八智 第2統 第 1戶 幼學 申翊朝 改 國朝 戶 ○背面: 申國朝의 婢 3口에 대한 尙州牧 立案	49×53	36

문서명	순번	연 대	발 급	수 취	문 서 내 용	규 격	수 록 면
	19	1804(純祖4)	行縣令 (義城縣令)	申匡朝	○南部面 第14 下八智里 第1 統 第4戶 幼學 申國朝 改 匡朝 戶	47×51	38
	20	1810(純祖10)	行縣令 (義城縣令)	申冕穆	○南部面 第14 下八智里 第1 統 第4戶 幼學 申匡朝 改 冕穆 戶	41×42	39
	21	1813(純祖13)	行縣令 (義城縣令)	申冕穆	○南部面 第14 下八智里 第1 統 第4戶 幼學 申冕穆 戶	47×62	40
	22	1819(純祖19)	行縣令 (義城縣令)	申冕穆	○南部面 第14 下八智里 第1 統 第4戶 幼學 申冕穆 戶	44×42	41
	23	1822(純祖22)	行縣令 (義城縣令)	申冕穆	○南部面 第14 下八智里 第1 統 第4戶 幼學 申冕穆 戶	40×52	42
	24	1825(純祖25)	行縣令 (義城縣令)	申駟協	○南部面 第14 下八智里 第1 統 第4戶 幼學 申冕穆 故代 子 駟協 戶	37×45	43
	25	1828(純祖28)	行縣令 (義城縣令)	申寅協	○南部面 第14 下八智里 第1 統 第4戶 幼學 申駟協 改 寅協 戶	44×53	44
	26	1831(純祖31)	行縣令 (義城縣令)	申寅協	○南部面 第14 下八智里 第1 統 第3戶 幼學 申駟協 改 寅協 戶	36×47	45
	27	1834(純祖34)	行縣令 (義城縣令)	申冕九	○南部面 第14 下八智里 第1 統 第3戶 幼學 申冕九 戶	40×53	46
	28	1837(憲宗3)	行縣令 (義城縣令)	申冕九	○南部面 第14 下八智里 第1 統 第4戶 幼學 申冕九 戶	40×52	47
	29	1840(憲宗6)	行縣令 (義城縣令)	申冕九	○南部面 第14 下八智里 第1 統 第1戶 幼學 申冕九 戶	39×42	48
	30	1843(憲宗9)	行縣令 (義城縣令)	申冕九	○金磊面 第10 嚴峴里 第3統 第2戶 幼學 申冕九 戶	35×49	49
	31	1846(憲宗12)	行縣令 (義城縣令)	申冕九	○金磊面 第10 嚴峴里 第1統 第5戶 幼學 申冕九 戶	35×45	50
	32	1849(憲宗15)	行縣令 (義城縣令)	申冕九	○金磊面 第10 嚴峴里 第4統 第1戶 幼學 申冕九 戶	39×52	51
	33	1852(哲宗3)	行縣令 (義城縣令)	申冕九	○金磊面 第10 嚴峴里 第4統 第3戶 幼學 申冕九 戶	39×49	52
	34	1885(高宗22)	行縣令 (義城縣令)	申相夏	○金磊面 第10 嚴峴里 第4統 第3戶 幼學 申相下 戶	32×47	53
測量圖	1	1909(隆熙3)	申相義	申基萬	○民有森林略圖	24×31	54

5. 置簿·記錄類

문서명	순번	연 대	작성자	문 서 내 용	규 격	수록면
執事分定記	1	未詳	未詳	○丹邱書院立享時執事分定記	50×542	55
笏記	1	戊戌	丹邱書院	○丹邱書院立享時笏記	30×121	64
其他記錄類	1	未詳	未詳	○退頭法, 引辭法, 痘疹歌 等	11×71	67
	2	未詳	未詳	○安葬擇日記	24×14	70
	3	未詳	未詳	○問梅者植物之一	24×192	71
	4	未詳	未詳	○服制	30×102	77
	5	1900年前後	未詳	○申萬教 後代의 世系	27×70	80
	6	未詳	未詳	○鵝洲申氏世系	12×73	82
	7	未詳	未詳	○雜錄	15×20	88

6. 書簡·通告類

문서명	순번	연 대	발 급	수 취	문 서 내 용	규 격	수록면
簡札	1	辛酉	金琦·金華鎮 等	未詳	○斯文運回: 三先生禱禮卜吉	28×40	90
	2	辛酉	曹錫斗·曹相龍 等	未詳	○祝祀事	24×39	91
告示	1	1894(高宗31)	未詳	未詳	○勸學之方	24×30	92
慰狀	1	1874(高宗11)	柳致春	申生員	○族侄婦查夫人喪事	30×35	93
	2	1874(高宗11)	權錫天	申生員	○族侄婦查夫人喪事	30×46	94
	3	1874(高宗11)	張放駿	未詳	○先夫人喪事	21×26	95
	4	1882(高宗19)	李在鋌	未詳		20×44	96
	5	1882(高宗19)	朴奇萬	申生員	○族兄喪事	27×34	97
	6	1882(高宗19)	查弟李以駟	申生員	○伯氏查兄喪事	30×37	98
	7	1882(高宗19)	朴宗奎	申生員	○族兄氏喪事	30×43	99
	8	1882(高宗19)	查弟朴衡祖	申生員	○仲氏丈喪事	30×41	100
	9	1882(高宗19)	金世秉	查丈	○先府君尊查丈喪事	30×40	101
	10	1882(高宗19)	金弼洛	未詳	○先府君查丈喪事	30×34	102
	11	1884(高宗21)	朴奇寅	申生員	○先府君喪事	24×43	103
	12	1884(高宗21)	下生	未詳		15×29	104
	13	1884(高宗21)	吳鳳燮	未詳		18×37	105
	14	1884(高宗21)	金鎮澤	申生員	○先本生府君喪事	30×35	106
	15	1906(光武10)	朴南奎	未詳	○族兄喪事	27×28	107
	16	1906(光武10)	河大澈	申生員	○先府君喪事	22×42	108
	17	1906(光武10)	趙龍秋	申生員	○族兄喪事	27×45	109
	18	1906(光武10)	外弟金榮周	內兄主	○舅主喪事	30×31	110

문서명	순번	연 대	발 급	수 취	문 서 내 용	규 격	수 록 면
	19	1906(光武10)	李章茂	申生員	○族兄尊喪從叔喪事	30×31	111
	20	1906(光武10)	李重明	申生員	○先府君喪事	35×35	112
	21	1906(光武10)	趙性漢	申生員	○族從兄查從白兄喪事	36×37	113
	22	1906(光武10)	李達浩	申生員	○先府君喪事	36×35	114
	23	1906(光武10)	金翰周	申生員	○族兄姑叔主喪事	38×32	115
	24	1906(光武10)	金弼洛	未詳		25×36	116
	25	1906(光武10)	吳在根	申生員	○先府君喪事	22×44	117
	26	1906(光武10)	姻契權耆洛	申生員	○先府君姻尊兄喪事	26×40	118
	27	1906(光武10)	趙性哲	申生員	○先府君喪事	30×36	119
	28	1906(光武10)	吳致昇	申生員	○先大人矩菴公喪事	50×45	120
	29	1906(光武10)	查弟李遠浩	未詳	○別紙	30×36	121
	30	1906(光武10)	金輝鍾·健鍾	申生員	○先大人府君喪事	20×35	122
	31	1906(光武10)	洪在謙	申碩士	○先府君矩菴公喪事	25×40	123
	32	1907(隆熙1)	查弟李章濩	未詳		23×39	124
	33	1907(隆熙1)	韓若愚	申碩士	○先府君喪事	60×37	125
	34	1907(隆熙1)	山人大隱	未詳		24×18	126
	35	1907(隆熙1)	金永鎮	申生員	○先府君喪事	40×46	127
	36	1907(隆熙1)	李鍾九	申碩士	○先府君喪事	62×38	128
	37	1907(隆熙1)	朴澄祖·演祖 等	申生員	○先府君喪事	24×42	129
	38	1908(隆熙2)	金健洛·圭洛 等	申生員	○先府君喪事	23×32	130
	39	1908(隆熙2)	朴泰能	申生員	○先府君喪事	30×36	131
	40	1908(隆熙2)	內再從弟申亮煥	永川 梧寬宅	○從祖考喪禮	23×56	132
	41	1908(隆熙2)	朴澄祖	未詳	○先府君喪事	40×32	135
	42	1909(隆熙3)	李駿坤	申生員	○先大人查兄府君喪事	60×32	136
	43	1909(隆熙3)	張永周	申碩士	○先府君喪事	42×41	137
	44	庚戌	李炳奎	申雅士	○先府君喪事	50×35	138
	45	未詳	查下生朴南奎	未詳		20×40	139
	46	乙未	查弟朴廷禎	未詳		21×44	140
通文	1	1870(高宗7)	永溪書院	玉山書院	○虎溪 申先生의 燔禮 舉行	80×62	141
한글간찰	1	20世紀	申基萬	申亮煥	○아들이 부모에게 보 내는 안부편지	19×14	142
婚書	1	庚寅	申	未詳	○涓吉單子	30×42	143
	2	1882(高宗19)	申相夏	未詳	○婚書	40×60	144

7. 詩文類

문서명	순번	연 대	작성자	문서 내용	규 격	수록면
輓詞	1	20世紀前半	族侄基鳳	○忍祖家聲繼繼…	181×19	145
	2	20世紀前半	族弟命煥	○稟貫軒軒儼且溫婆娑…	180×20	150
	3	20世紀前半	族從世煥	○山河鍾元氣惟 君稟賦…	125×20	155
	4	20世紀前半	三從叔相義	○氣稟且溫壁避期享百年…	120×19	158
	5	20世紀前半	三從叔相孝	○我 公淑氣鍾天眞泛…	71×19	161
	6	未詳	晉山后人姜永璇	○忍翁餘韻德門開…	19×113	165
	7	未詳	坡平散人尹定鉉	○崇閣嶠南有若人言…	46×50	168
	8	未詳	通家生成安趙性洪	○愛爾寒梅有美質…	90×35	169
	9	未詳	英陽南龍鎮	○擬爲今日哭不語…	120×27	171
	10	未詳	族從燾祐	○人之壽夭摠由天…	170×27	174
	11	未詳	內從聞韶金翰周	○嗟嗟吾聖賓挺生…	47×72	179
上樑文	1	未詳	未詳	○靈垺重修上樑文	24×29	180
試券	1	1646(仁祖24)	申塚	○進士3等第10人望, 樵夫拜賦, 二難還復以詩鳴詩 ○背面: 1481년 將仕郎 義城訓導 申俊禎을 從仕郎 行義城訓導로 임명하는 吏曹의 告身 楮接	74×227	181
	2	17世紀中葉	申禹錫	○壽王報叔敖賦 ○背面: 1402~1424년 사이에 申士廉 등이 吏曹 등에 올린 帖 5장 楮接	70×200	185
	3	未詳	未詳	○流涕別舊君論	50×226	189
	4	未詳	未詳	○伺寢刺宮翼	70×190	193
	5	未詳	未詳	○賜金龍扇賦, 五家隨獵驪山圖詩	74×201	195
	6	未詳	未詳	○對策, 春秋義肆大告	68×192	199
	7	未詳	未詳	○貯錢西舍論	78×186	203
	8	未詳	未詳	○重賞之下必有勇夫賦, 谷永諫求神仙論	50×200	205
	9	未詳	未詳	○對策	45×126	209
	10	未詳	未詳	○文章經國之大業賦	70×162	216
	11	1676(肅宗2)	申禹錫	○錄名部分	70×20	220
	12	17世紀 後半	申禹錫	○錄名部分	70×20	221
祭文	1	1704(肅宗30)	舍兄美中申德潤	○亡弟深源(申德滄)	35×74	222
	2	丁亥	婦弟慶州金教憲	○季妹夫處士鵝州申公終祥之日	40×55	224
	3	癸亥	再從兄鐸教	○再從弟就窳之日	37×41	225

8. 成冊古文書

문서명	순번	연 대	작성자	문서내용	규 격	수록면
[雜錄]	1	未詳	未詳	○敬書懶齋先生歸友唱酬錄, 申君與叔益梅竹記, 通文 等	20×9	226
挽祭	1	1853年 以後	未詳	○申冕九 및 妻 永川李氏의 喪·祭 關聯 慰狀, 輓詞, 祭文 謄抄	23×20	231
哀感錄	1	1853~1856	未詳	○1853年 9月 申冕九 初喪부터 1856年 5月 申冕九 配 永川李氏 小祥까지의 弔客錄	20×19	246
探微軒稷案	1	1917	未詳	○丁巳至月發起, 忍齋宗家	29×20	266
氷溪書院田畝案	1	未詳	未詳	○氷溪書院의 田畝案	30×21	308





【부록 4】 오봉가문(梧峯家門, 鳳州公派)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1. 教令類

문서명	순번	연 대	발 급	수 취	문 서 내 용	규 격	수록면
教書	1	1617(光海君9)	光海君	申之悌	○教昌原府使申之悌明火作賊鄭大立等盡心跟捕賞加書	85×176	325
有旨	1	1602(宣祖35)	宣祖	申之悌	○校正廳郎廳更爲被抄爾其乘駟斯速上來事	38×44	327
	2	1605(宣祖38)	宣祖	申之悌	○爲司憲府持平爾其斯速上來事	47×53	328
	3	1623(仁祖1)	仁祖	申之悌	○爲承政院同副承旨爾其斯乘駟速上來事	52×64	329
	4	1645(仁祖23)	仁祖	申弘望	○爲承政院注書爾其斯速上來事	50×59	330
	5	1652(孝宗3)	孝宗	申弘望	○爲司憲府持平爾其斯速乘駟上來事	50×60	331
告身	1	1589(宣祖22)	吏曹	申之悌	○務功郎卽行司瞻寺直長 ○甲科第三人例加并授	50×74	332
	2	1589(宣祖22)	吏曹	申之悌	○宣務郎行司瞻寺直長 ○己十一別加	49×69	333
	3	1589(宣祖22)	吏曹	申之悌	○宣教郎行司瞻寺直長 ○己十一別加	49×65	334
	4	1590(宣祖23)	吏曹	申之悌	○承訓郎行司瞻寺直長 ○庚四別加	49×65	335
	5	1590(宣祖23)	吏曹	申之悌	○承議郎行司瞻寺直長 ○宗廟親祭時執事加	53×86	336
	6	1591(宣祖24)	吏曹	申之悌	○承議郎司憲府監察	49×68	337
	7	1591(宣祖24)	吏曹	申之悌	○承議郎行禮安縣監	49×68	338
	8	1591(宣祖24)	吏曹	申之悌	○奉直郎行禮安縣監 ○辛十一別加仕加并給	52×78	339
	9	1594(宣祖27)	吏曹	申之悌	○通善郎禮曹正郎兼禮安縣監	40×43	340
	10	1594(宣祖27)	吏曹	申之悌	○通德郎行禮安縣監 ○甲正別加	43×60	341
	11	1595(宣祖28)	吏曹	申之悌	○通德郎行禮安縣監兼春秋館記事官	41×47	342
	12	1596(宣祖29)	宣祖	申之悌	○朝奉大夫行禮安縣監兼春秋館記事官 ○仕加	41×43	343
	13	1596(宣祖29)	宣祖	申之悌	○朝奉大夫行禮安縣監兼春秋館記事官	39×48	344
	14	1596(宣祖29)	宣祖	申之悌	○朝散大夫行禮安縣監兼春秋館記注官 ○丙七別加	41×52	345

문서명	순번	연 대	발 급	수 취	문 서 내 용	규 격	수록면
	15	1597(宣祖30)	宣祖	申之悌	○朝散大夫行世子侍講院文學	38×44	346
	16	1597(宣祖30)	宣祖	申之悌	○定略將軍行龍驤衛副司直	39×44	347
	17	1606(宣祖39)	宣祖	申之悌	○禦侮將軍行忠武衛副司勇	40×43	348
	18	1617(光海君9)	光海君	申之悌	○通政大夫行昌原大都護府使 ○明火作賊鄭大立等盡心跟捕極 爲可嘉加資事	54×76	349
	19	1623(仁祖1)	仁祖	申之悌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 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44×60	350
	20	1630(仁祖8)	吏曹	申弘望	○宣教郎行康陵參奉	45×58	351
	21	1635(仁祖13)	吏曹	申弘望	○承訓郎行成均館學諭	52×70	352
	22	1635(仁祖13)	吏曹	申弘望	○承議郎行奉常寺副奉事兼成均 館學諭	54×62	353
	23	1635(仁祖13)	吏曹	申弘望	○承議郎行奉常寺奉事兼成均館 學諭	52×64	354
	24	1635(仁祖13)	吏曹	申弘望	○奉訓郎行奉常寺奉事兼成均館 學諭 ○癸三別加	52×69	355
	25	1644(仁祖22)	吏曹	申弘望	○奉訓郎行承政院注書兼春秋館 記事官	52×69	356
	26	1645(仁祖23)	吏曹	申弘望	○通善郎行承政院注書兼春秋館 記事館	49×70	357
	27	1646(仁祖24)	仁祖	申弘望	○朝奉大夫行成均館典籍	51×69	358
	28	1646(仁祖24)	仁祖	申弘望	○朝奉大夫行兵曹佐郎	51×70	359
	29	1646(仁祖24)	仁祖	申弘望	○奉列大夫行司諫院正言 ○副司正時乙二乙九別加並授	52×69	360
	30	1646(仁祖24)	仁祖	申弘望	○中訓大夫行司諫院正言 ○丙五別加	52×69	361
	31	1646(仁祖24)	仁祖	申弘望	○禦侮將軍行義興衛司果	52×68	362
	32	1647(仁祖25)	仁祖	申弘望	○通訓大夫行禮曹佐郎	51×67	363
	33	1647(仁祖25)	仁祖	申弘望	○通訓大夫行全州府判官	51×70	364
	34	1652(孝宗3)	孝宗	申弘望	○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	49×60	365
	35	1652(孝宗3)	孝宗	申弘望	○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	53×70	366
	36	1656(孝宗7)	孝宗	申弘望	○通訓大夫行蔚山都護府使	50×66	367
	37	1659(孝宗10)	孝宗	申弘望	○通訓大夫行豊基郡守	54×70	368

문서명	순번	연 대	발 급	수 취	문 서 내 용	규 격	수 록 면
	38	1663(顯宗4)	顯宗	申弘望	○通訓大夫行江原道都事	52×64	369
	39	1663(顯宗4)	顯宗	申弘望	○通訓大夫行成均館司藝	53×70	370
	40	1664(顯宗5)	顯宗	申弘望	○通訓大夫宗簿寺正兼春秋館編修官	52×69	371
	41	1671(顯宗12)	顯宗	申弘望	○通訓大夫承文院判校兼春秋館編修官	53×65	372
紅牌	1	1639(仁祖17)	仁祖	申弘望	○文科 丙科 第1人 及第	92×75	373
白牌	1	1627(仁祖5)	仁祖	申弘望	○進士 3等 第46人 入格	83×36	374
	2	1727(英祖3)	英祖	申道三	○生員 3等 第31人 入格	95×45	375
追贈教旨	1	1646(仁祖24)	仁祖	申之悌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 ○扈聖原從功臣二等依承傳追贈	65×86	376
	2	1646(仁祖24)	仁祖	淑夫人趙氏	○貞夫人 ○贈嘉善大夫吏曹參判...申之悌妻依大典從夫職	65×82	377
祿牌	1	1589(宣祖22)	吏曹	申之悌	○己丑年第拾肆料祿 ○務功郎行司瞻寺直長	87×53	378
	2	1590(宣祖23)	吏曹	申之悌	○庚寅年第拾肆料祿 ○宣教郎行司瞻寺直長	103×79	379
	3	1591(宣祖24)	吏曹	申之悌	○辛卯年祿 ○承議郎行司瞻寺直長	92×77	380
	4	辛卯	吏曹	未詳	○辛卯年祿	90×44	382
差定帖	1	1639(仁祖17)	吏曹	申弘望	○新及第前參奉宣教郎 申弘望을 權知成均館學諭로 差定함.	52×69	383

2. 疏·劄·啓·狀類

문서명	순번	연 대	발 급	수 취	문 서 내 용	규 격	수 록 면
所志類	1	1832(純祖32)	申祖楠·申祖承 等	城主 (義城縣令)	○八代祖 梧峯公 墳山 偷埋之變	91×57	384
	2	1832(純祖32)	申祖楠·申祖承 等	城主 (義城縣令)	○先山 偷塚掘移事	95×57	385
	3	1832(純祖32)	申祖楠·申文協 等	城主 (義城縣令)	○梁用吉 偷埋作變事	98×60	387

3. 證憑類

문서명	순번	연대	발급	수취	문서내용	규격	수록면
立後成文	1	1805(純祖5)	申祖祐 等 一門諸族		○宗家立后標文, 熙穆의 出系 祖應	114×69	388
準戶口	1	1666(顯宗7)	義城官	申弘望	○金磊面 龜尾里 住戶 通訓大夫前宗簿寺正兼春秋館編修官 申弘望 戶	44×100	389
	2	1666(顯宗7)	義城官	申漢老	○金磊面 龜尾里 住戶 宣敎郎 申漢老 戶	34×40	391
	3	1675(肅宗1)	義城官 行縣令	申叔範	○金磊面 龜尾里 住戶 通訓大夫 申弘望 故代 幼學 申叔範 戶	49×91	382
	4	1681(肅宗7)	義城官 行縣令	申叔範	○金磊面 第2龜尾里 第4統 第2住戶 幼學 申叔範 戶	45×65	393
	5	1687(肅宗13)	義城官 行縣令	申叔範	○金磊面 第2龜尾里 第3統內 第5戶 幼學 申叔範 戶	41×82	394
	6	1699(肅宗25)	義城官 行縣令	申叔範	○西面 金磊 龜尾里 第3統 第1住戶 幼學 申叔範 戶	37×112	395
	7	1702(肅宗28)	義城官 行縣令	申叔範	○金磊面 第2龜尾 第2統 第4住戶 幼學 申叔範 戶	38×171	397
	8	1708(肅宗34)	義城官 行縣令	申辰龜	○金磊面 第2龜尾里 第2統內 第5住戶 幼學 申辰龜 戶	38×44	400
	9	1711(肅宗37)	行縣令	申叔範	○第2龜尾里 第3統內 第1住戶 幼學 申叔範 戶	45×91	401
	10	1714(肅宗40)	行縣令	申賁龜	○幼學 申賁龜 戶	54×102	402
	11	1717(肅宗43)	義城官 行縣令	申賁龜	○金磊面 第2龜尾里 第3統內 第5戶 幼學 申賁龜 戶	49×121	403
	12	1744(英祖20)	義城官 行縣令	申賁龜	○金磊面 第3龜尾里 第7統 第2戶 幼學 申賁龜 戶	46×129	405
	13	1789(正祖13)	義城官	申鼎五	○金磊面 第3龜尾里 第7統 第4戶 幼學 申鼎五 戶	45×102	407
	14	1798(正祖22)	義城官 行縣令	申鼎五	○西面 金磊 第3龜尾里 第4統 第2戶 幼學 申鼎五 戶	52×85	409
	15	1803(純祖3)	義城官	申祖應	○西面 金磊 第3龜尾里 第6統 第3戶 幼學 申祖應 戶	40×32	410
	16	1816(純祖16)	義城官 行縣令	申熙穆	○西面 金磊面 第3龜尾里 第統 第戶 幼學 申宗運 改 熙穆 戶	37×58	411
	17	1822(純祖22)	義城官 行縣令	申休龍	○西面 金磊 第3龜尾里 第統 第戶 幼學 申昌虎 改 休龍 (=熙穆) 戶	35×68	412
	18	1846(憲宗12)	義城官 行縣令	申相遠	○西面 金磊 第3龜尾里 第統 第戶 幼學 申濟遠 改 相遠 (=相基) 戶	44×59	413

문서명	순번	연 대	발 급	수 취	문 서 내 용	규 격	수록면
	19	1849(憲宗15)	義城官 行縣令	申相遠	○西面 金磊 第3龜尾里 第 統 第 戶 幼學 申相遠(=相基) 戶	45×52	414
	20	1852(哲宗3)	義城官 行縣令	申相遠	○西面 金磊 第3龜尾 第 統 第 戶 幼學 申相遠(=相基) 戶	38×59	415
	21	1855(哲宗6)	義城官 行縣令	申相遠	○西面 金磊 第3龜尾里 第 統 第 戶 幼學 申相遠(=相基) 戶	40×52	416
	22	1858(哲宗9)	義城官 行縣令	申相遠	○西面 金磊 第3龜尾里 第 統 第 戶 幼學 申相遠(=相基) 戶	44×62	417
	23	1861(哲宗12)	義城官 行縣令	申相遠	○西面 金磊 第3龜尾里 第 統 第 戶 幼學 申相遠(=相基) 戶	45×62	418
	24	甲子	行縣令	未詳	○年代 未詳 準戶口의 後半部 奴婢秩 부분	40×52	419

4. 書簡·通告類

문서명	순번	연 대	발 급	수 취	문 서 내 용	규 격	수록면
問安單子	1	1657(孝宗8)	申弘望	兵馬節度使	○通訓大夫行蔚山都護府使慶州 鎮管兵馬同僉節制使 申弘望이 兵馬節度使相國合下에게 보낸 問安單子	47×97	420
婚書	1	1666(顯宗7)	申弘望	義城金氏家	○請婚, 孫 叔範의 婚禮時	62×82	421
	2	1694(肅宗20)	申叔範	載寧李氏家	○請婚, 長子 必遠의 婚禮時	60×82	422

5. 詩文類

문서명	순번	연 대	작성자	문 서 내 용	규 격	수록면
試券	1	1627(仁祖5)	申弘望	○進士3等第46人望, ○○○賦, 題王會圖詩	80×206	423
	2	1760(英祖36)	申漢老	○對策, 春秋義	73×203	426
	3	未詳	未詳		73×196	430
	4	未詳	未詳	○禮義	77×106	433
	5	未詳	未詳		69×82	435
	6	未詳	未詳		58×312	436
	7	未詳	未詳		81×84	442
	8	未詳	未詳	○書義 平秩西成	71×175	444
	9	未詳	未詳		82×92	447

6. 成册古文書

문서종류	순번	연 대	작성자	문 서 내 용	규 격	수록면
齋舍完議	1	1717(肅宗43)	申賁龜(序文)	○齋舍完議序, 完議節目, 追 定約條(1758年)	28×36.5	449
龜尾舊泐新粧都目	1	庚戌		○龜尾舊泐新粧都目完議 ○條約節目 ○泐主 申氏	28.5×34.5	467
貞夫人趙氏不忘記	1	1650(孝宗1)	未詳	○天啓 庚寅年終天錄 ○申之悌妻 威安趙氏 初喪時	25×26	487
壬戌年終天錄	1	1742(英祖18)	未詳	○申道三 初喪時	19×19	502
佳道谷祔葬位考位 不忘記	1	1745(英祖21)	未詳	○申賁龜 初喪時	20×22	510
黃蛇日錄	1	1749(英祖25)	未詳	○申重仁 初喪時 日記, 輓辭, 祭文, 慰狀	20.5×31	528
梧峯先生年譜草記	1			○梧峯先生年譜草記	19×29	561
同道會案	1	1602(宣祖35)	李好閔(題)	○嶺南同道會	28.5×38	596
梧峯手蹟	1			○梧峯 申之悌 簡札帖	27×34.5	600
孤松手蹟	1			○孤松 申弘望 簡札帖	22.5×35	616
先輩筆蹟	1			○筆帖	22.5×34.5	643

凡 例

- 一. 本 『古文書集成』 77은 義城 鵝州申氏 梧峯家門・虎溪家門篇이다.
- 二. 梧峯家門 古文書는 慶北 義城 鳳陽面 龜尾洞에 거주하는 申炳哲氏(梧峯宗孫) 소장자료로 1994년에 본원에서 정리하였으며, 虎溪家門 古文書는 釜山 南區 光山洞에 거주하는 申基八氏 소장자료로 1995년에 본원에서 정리하였다.
- 三. 本書의 분류는 본 연구원에서 간행한 『韓國古文書整理法』(尹炳泰 外, 1994)에 따랐다. 위 책에서 거론하지 않은 문서는 문서의 양식과 내용에 따라 문서명을 부여하고, 해당하는 類에 포함시켰다.
- 四. 문서는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정확한 연대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뒷부분에 배치하였다.
- 五. 연도표시는 서기로 표기하고, 괄호 속에 해당 왕의 재위연도를 표기하였다. 干支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干支를 표기하였으며, 문서의 작성시기를 모르는 경우는 未詳으로 표기하였다.
- 六. 각 문서에는 문서명, 번호, 작성연대, 규격(세로×가로)을 차례대로 기재하였다. 문서규격의 단위는 센티미터(cm)이다.
- 七. 일부문서의 경우 원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형태를 바꾸거나 축출을 달리하여 판독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八. 수록자료는 본원소장 마이크로 필름 NO. 63000~6302, 6344, 6452, 6454에 촬영된 것이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義城 鵝州申氏 虎溪家門篇

一。教令類

(二) 白牌

白牌 1 1646 (仁祖24) 94 × 44

教旨

幼學申採進士三等第十人入格

者

順治三年三月初八日

化民申冤塔申冤塔等

右謹言情由段民舊塔祖墳山及見坡墳山在於南面而十八智塔不靈今初五日夜不知何許人偷葬於切近要至虛故昨日長中王新是年則題教由不日內期能投葬盡
山下洞任座之處的只是才等以題音付之洞任而民等與之搜覓則全屬龜尾居住是匿偷葬其弟也緣由仰祈為太子摘奸後即刻揭移以懲住呈呈之無難偷葬是遠使保

民等先龍之地千萬無祝
行下如教等

城主 處分

丙午五月 日申冤塔

- 申冤塔
- 申冤塔
- 申冤塔
- 申元祐
- 申元祐
- 申錫祐
- 申承祐
- 申命祐
- 申文祐 等



高 取 指
 好 以 來
 可 也
 古 著

今化民申相夏

右謹言伏以近來偷葬之弊可勝言哉窺人局內... 律則自今以後更無保護先榮之人此豈非私情之最... 大因風化者非... 龍柏官處

林人偷埋事傳... 閣下是守則題... 搜覓則偷塚主必無不知之理... 不勝感戴自

春至夏日事搜覓而偷塚之漢尚無形影是違又於一夜之間有一坏新堆... 於前偷積近之地... 橫斷欲死為全孫

之心無而不至然顧念民之家世守禮法名謂士族且伏念 閣下法以行政風化日新如此偷葬之習... 自者處分

於按法之下而民之私情隨可以蒙河海之澤矣茲敢仰祈 孝理之下為去時大抵民之先山所在之地... 向物關之

洞而其四近居民以頑愚之習名在一邑伏乞 特施嚴令於附近諸岡前後偷塚... 實為極移以重偷埋隱

之習而便此嚴刑禮義之紳永無如許傷風敗俗之弊千萬血稅之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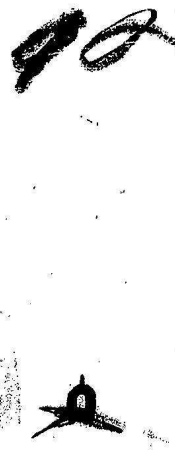
行下向教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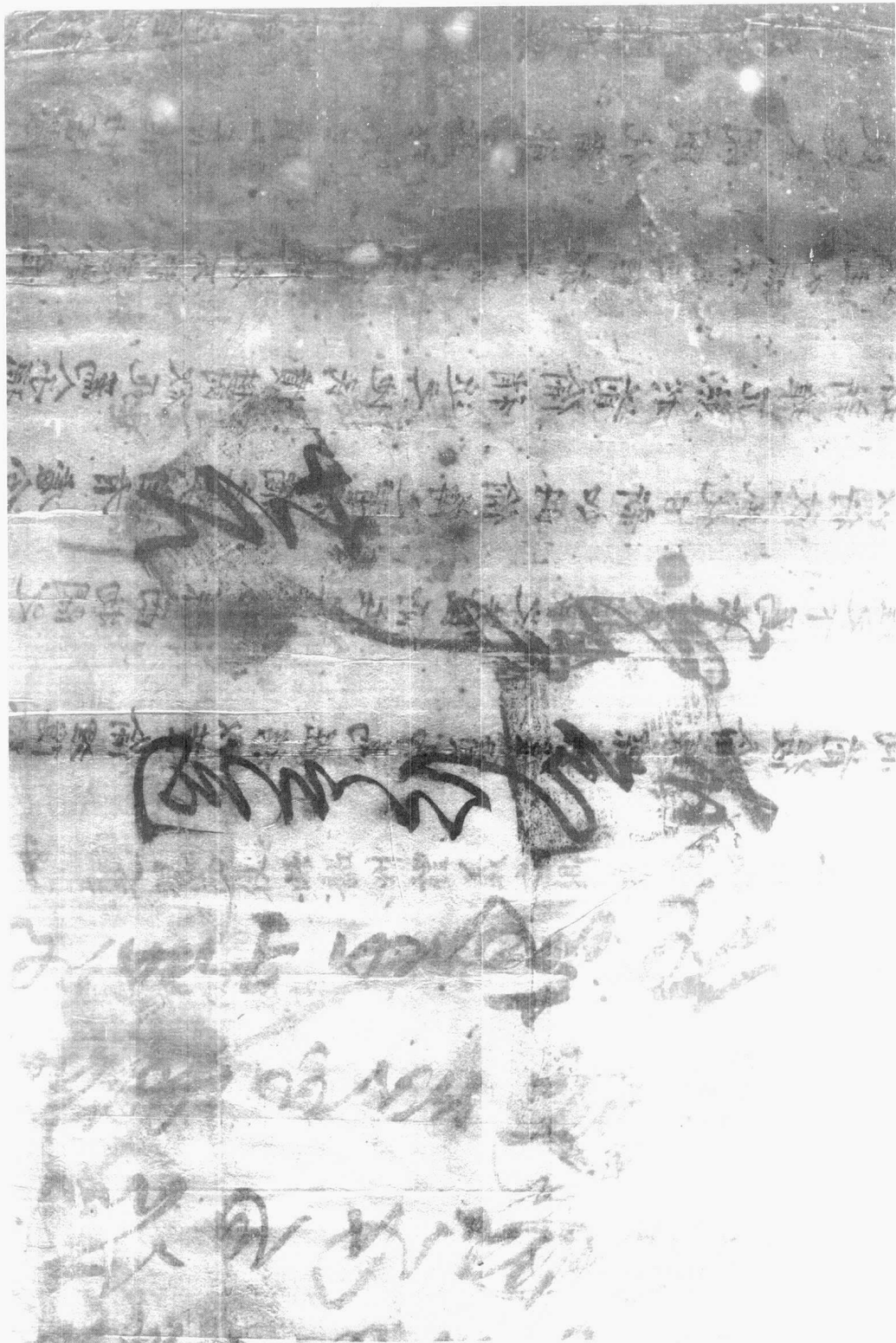
城王 處分

癸酉八月

日

偷塚至山至... 口... 權... 經... 月... 稿... 公... 抄... 所





金磊面奄現化氏申相夏申相衡申續祐等

右謹言伏以松禁自有常典而況士族先塋封域環松法意攸重者乎民等七代祖墳山在安平面新洞

外谷之原而封域環松累世守護大可連抱者十餘株矣不意去月何許頑漢最其四株之可為棟樑者

乘夜偷伐人心世道豈如是無嚴耶不勝憤痛敢此仰訴于

法庭之下伏乞

行下向教事

城主

處分

戊戌九月日

申相翊
申相玄
申敦植
申龍煥
申鳳煥
申麟煥
申圭煥等

出向

士之家先塋

環松無能偷

至何忍習以

丁嚴防後

洞任查核報

來以為初般嚴

任義誠郡中相夏申續稅申教撰等謹齊沐上書于

行慶州郡守兼捧稅官閣下伏以 尊世居本鄉多見事物之變幻而意有若稅奮也批一始說未幾其變多段跡且等此種稅奮亦河落只承以書
院審稅院之後為也稅奮矣稅軍軍罷後空留無用故自官為吏通清帳上舉而上報軍府又 巡世法受發賣之條 奉從時買得兩慶六年
奮矣未幾年曾御史行到本郡以謂右奮廉價實買每手十餘兩式加款以補公納又未幾大印吳吏率巡校未到補以發賣至而每手落四手兩式置
火督推矣又未幾月幸為內藏院屬公而兵也掠志錢離白運給當和價錢與再次加取銀無 此給稅申教撰明如實事 軍程傳令諸作
望聖品未定賭數上有五手共於手每秋執未使奮主官此實公私俱便之政以此之故民無文怨而稅納亦趁其無變矣不意昨奉 尊世居本鄉多見事物之變幻而意有若稅奮也批一始說未幾其變多段跡且等此種稅奮亦河落只承以書
公得聖民作此等極奮奔落所加亦十餘手之倍矣 其等不勝論矣實于本官又呈于捧稅義與官則以相考厘正次金看與派真其 澤來待教 尊世居本鄉多見事物之變幻而意有若稅奮也批一始說未幾其變多段跡且等此種稅奮亦河落只承以書
題音到付是等則本官分付內該是以巨通字在拘因待其生未押送教是故 其等邊待旬月之際大印也校未收督刷次擬去該作臆地勤捧世豈有法
聖旨特即時題音留在本官而本官則上京已久不得更呈是如到今秋事已成當趁時詳覽在 任職明政下為去手洞燭教是後 特下傳
今係未定賭本數俾無作民爭寬之地是道以京承歲恒式于葛茶侯之至

行下向教是事

任慶州郡守兼捧稅官

閣下 處分

任慶州郡守兼捧稅官



癸卯十月 日

權領石手落 擬下處分 定賭 全有洞手落中葉九手定賭

賭程之似在

於稿本中

此為...
 一類...
 二類...
 三類...
 四類...
 五類...
 六類...
 七類...
 八類...
 九類...
 十類...

此為...
 一類...
 二類...
 三類...
 四類...
 五類...
 六類...
 七類...
 八類...
 九類...
 十類...

化民申相夏申相憲申續粘等

右謹言伏以稅當屬屯之痼弊於本主嘗及於該作可勝言哉右當本以先院之物見奪於砲廳而年前邑通清帳之日從公價買得此實業買渠餅也其後曾繡衣之再歛吳汝負之倍徵是豈可忍而末末 內職院之屬屯維 敢違令但其隨

土高下定賭有式上自五斗終於二斗而使本主從所出於豐歛使該作應其稅於公報者乃在區之惠政也始事之公崇也民苦之先

墜下谷庄巽道負蒙字推字三斗三升落只當亦初買於清帳再買於繡歛三買於吳徵亦入於內職也而其土劣故從一斗每

斗落只二斗式合六斗六升乙年應稅矣不意今者忽以四斗倍加焉故問于本邑幹事之吏則謂以汝負之所誤然今年則曾不播庫

者本而況此突歲其或減之無性也密乃反增之何心也莫重公簿果是年之慶 猶為不足 在區谷如蒙民者恒擅於冷流後

於由患生者未敢言者皆委平年常數況可以當十四斗之加出字且斷屋會之番書院其之十斗而俱有此弊茲敢舉實請公

閱下掌土二斗之下伏乞特為查正施惠之地是道且中新境員首字三斗落之誤錄萬幸近將將境員之在區通負開關相

距遠矣會無耕作之事并為 嚴分付正其誤之地千萬息稅之至

行十向教事

城主 慶分

癸卯二月日

為要後

為化心

不表差

不務系

權惟若者 全月回

詳考生知苗案
則權收在名下
地負少者其自
在區以上既自得
勿論至多然租存

四。 證憑類

(一) 準戶口

準戶口 1 1696 (肅宗 22) 50 x 52

康熙二十五年正月義城官
 丁球曾祖朝奉天行祥直祭禮外親德祥存世本延安妻柳氏年三十五歲
 年二向年奉滿朝奉氏年九十號甲第... 改名德冷年九號年五號年九號
 張受年三十已籍順天故第年十仰父故世本姓輝是花年及世姓年五十五號年十號年
 班得貴遷安世姓年五十五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
 奏春甲辰世興陽故獲明年十五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
 奉東房輝代年十七已未父班叔世故母良一名輝輝普輝年十仰世班輝德父班叔為
 周州居奴名民年七十仰父林之傑世輝代今氏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
 年世輝排令年三十已亥父世世興陽店奴名呂四年二十已戌父班叔世明母良名知年
 年五世班輝良父班叔輝德而子世叔愛至年五十五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
 父本叔日孫世輝仁其叔輝禮今年三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
 父有叔明世康年五十五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
 父世龍年五十五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
 父于世班輝良父叔輝德生輝德居奴年二十已未父世世興陽居年五十五號年
 奴元年五十五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
 居奴性春年四十五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
 五世班輝良父名知輝年二十已亥父世世興陽居年五十五號年十號年
 之而奴元年五十五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
 世中子世班輝良父叔輝德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十號年
 四世良父名不詳昔自六十四號者



鳴本三
 三推律詰

賜奴子年五輝年事
 奴十九年生子娘今年有
 口女上念丁而逃輝真也年
 丁丑班輝自念念常知輝真
 主辰班輝真念念不
 媽以先年手持世良女名如
 空奴在月年奇在母班一
 輝第五班奴越輝津本五口
 介生事輝輝輝輝輝輝輝輝
 貴遠輝年
 孝年
 今化輝甚之言事
 五親奴日
 秘奴子
 二十六戌辰
 永川水口

行縣令

永川水口

二十六戌辰
 秘奴子
 五親奴日
 今化輝甚之言事
 孝年
 貴遠輝年
 介生事輝輝輝輝輝輝輝輝
 輝第五班奴越輝津本五口
 空奴在月年奇在母班一
 媽以先年手持世良女名如
 主辰班輝真念念不
 丁丑班輝自念念常知輝真

準戸口 16 1795 (正祖19) 42 × 40

乾隆元年 月 日 義城官
 考之師成籍居掖內南智面第卅二下(智聖堂)統第卅五知學申萬教事
 湖朝年寸宗茂名本韓別
 外祖學正龜周本在溪
 未班洪氏年三十也丑
 婢庚辰年三十六庚辰年丑班婢字即年子九丁亥父良人金從九世松婢
 水即婢禮丹年已丑父朴海令母班外禮香美丑婢松蓮每去或班外妻多
 丑班奇子子戶相準者

行縣令

準戸口 18 1801 (純祖 1) 49 × 53

嘉慶六年 月 日 義 啓

同 啓 生 兄 帳 內 印 西 家 正 下 次 報 第 正 統 家 之 錄 中 相 類 也

二 房 子 太 繼 嗣

宗 生 萬 教

祖 學 生 宗 烈

曾 祖 學 生 戒 模

外 祖 學 生 洪 慶 用 本 至 溪

奉 迎 洪 氏 年 五 丁 卅

翁 再 養 年 十 五 寅

表 朴 氏 年 五 丁 酉 籍 咸 陽

父 幼 學 春 著

祖 學 生 來 源

曾 祖 學 生 師 文

外 祖 學 生 金 致 光 本 尚 州

牌 正 辰 年 卅 二 房 辰 甲 寅 進 碑 文 占 年 六 十 三

部 外 喪 人 吳 鏡 奔 本 故 千 戶 相 道 洪 義

行 縣 令

準戸口 19 1804 (純祖4) 47 × 51

行縣令

準君

婢房屋年平五履展甲也述輝之占
母教得甲印父良人其孫本孝事勤君

外祖學生 金致光本尚州

曾祖學生 師文

祖學生 表源

父幼學 春著

藝補元年二十八月籍咸陽

癸亥年二十三官

奉母法元年四十八丑

外祖學生 洪龜月本奎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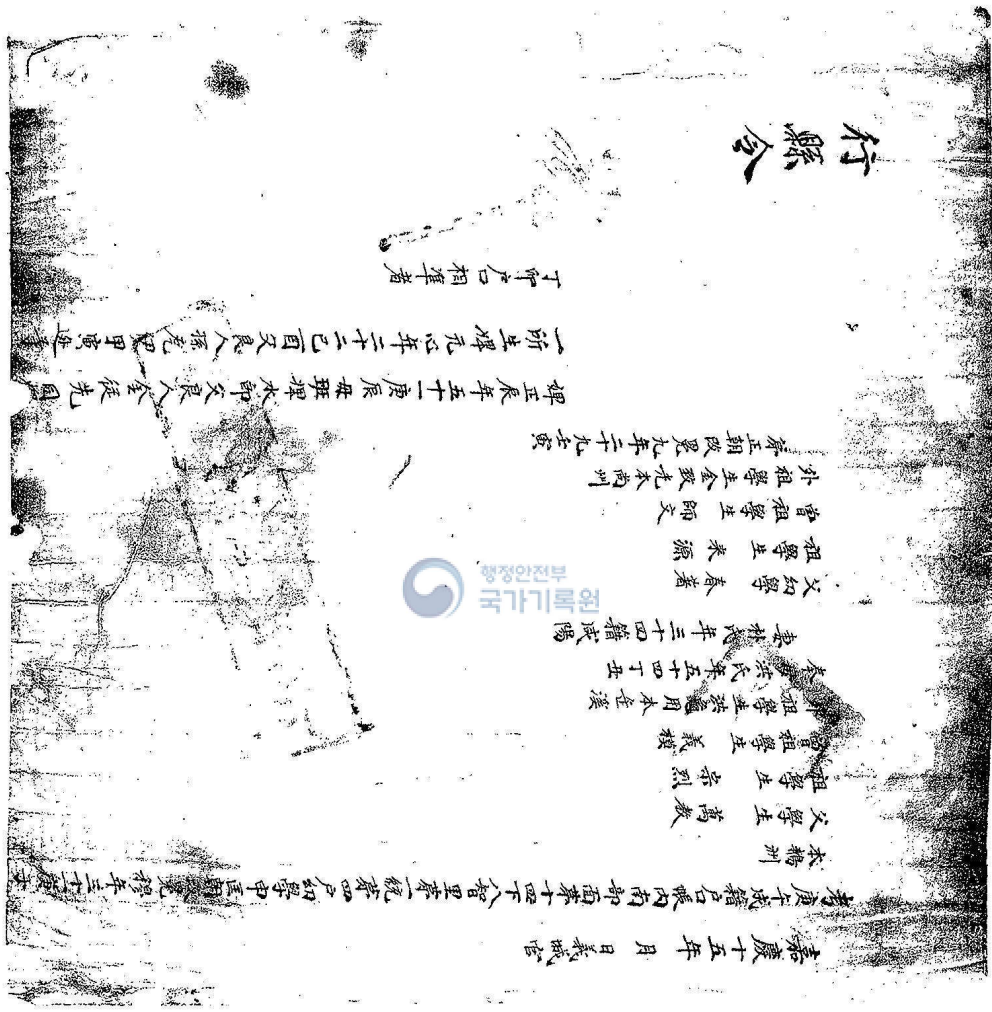
曾祖學生 義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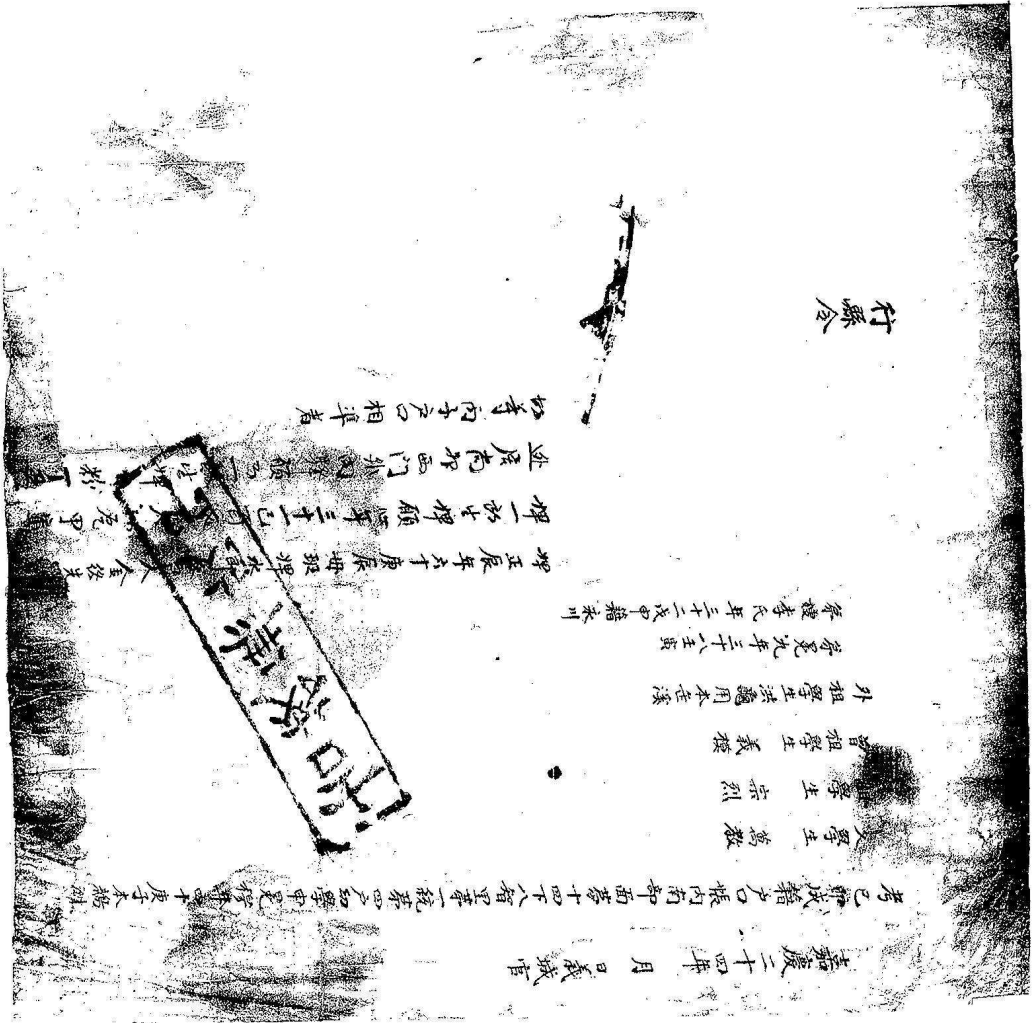
祖學生 宗烈

父學生 嵩敬

考甲子成籍乃帳內高卸而房年四下官畢辱統奉四月學中國朝教宣統年二十五庚本尚州

嘉慶九年 月 日 義城 啓





道光二年一月日義城官

考壬午成籍戸口帳内南部面第十四下八智里第一統着四戸初學申冕穆年四十三歲

父學生 著

祖學生 宗

曾祖學生 義模

外祖學生 洪龜用本在溪

第冕九年四十一壬寅

第嫂李氏年三十五籍永川

子駒暉年十八乙丑

碑庚辰年六月三製自碑一所生碑願心年三十四巳酉

孫危甲寅遷居善州門外內驛等巳卯戸口相準者

行縣令



行縣令

壬午元相準

婢願心年三十七自父長人孫岩母松坪房辰數者

叔母李氏年三十八籍永川

叔父晁九年四十四左賓

外祖望生朴春著本咸陽

曾祖學士 宗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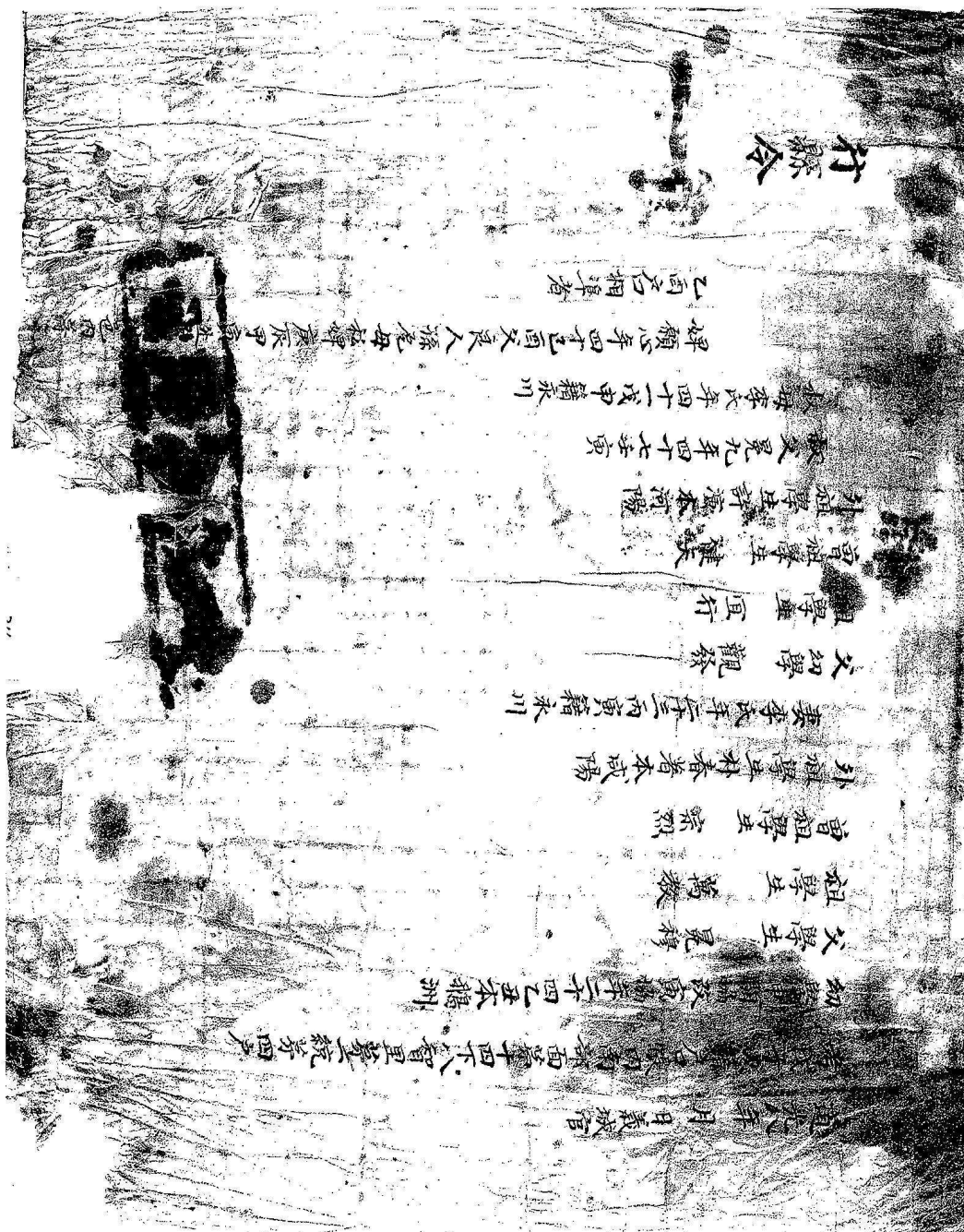
祖學生 萬教

父學生 兪穆

兄學生 兪穆 故代子 贈 愔年二十七 丑 本 鴨洲

成籍 厚 張 內 南 郭 面 第 十 四 八 智 里 第 一 家 寄 四

道光五年 月 日 義



道光十三年月日義城官
 考年卯成籍之帳內南面第十四个智里葉一統案
 學字申 駟協啟實協年二十七丑本揚洲
 父學生 冕穆
 祖學生 萬敬
 曾祖學生 宗烈
 外祖學生 朴春著本威揚
 妻李氏年二十六兩廣籍奉川
 父幼學 觀發
 祖學生 宜行
 曾祖學生 健天
 外祖學生 許演本河陽
 叔父 冕九年五十五寅
 叔母 李氏年四十四籍永川
 婢 元心年四十三己酉父良人孫彦仰 母養
 庚辰甲寅進等戊子元相準
 行縣令

道光十四年 月 日 義城官
 考甲午成籍戶口帳內南部面第十四戶智里奉一孫奉一
 幼學申寬九年五十三至寅本鵝洲
 父學生萬教
 祖學生宗烈
 曾祖學生。義模
 外祖學生洪龜用本在林
 妻李氏年四十六已酉籍永川
 父學生宜國
 祖學生潤天
 曾祖學生秀華
 祖及弟趙恭倫本楊州
 率子甲祿年十三至年
 侄廣協故
 侄婦李氏年二十九內寅籍永川
 仰後碑願心年四十六已酉籍永川
 庚辰年辛卯六月相進

永川縣令

道光廿七年 月 日 義城官

考丁酉成籍戶口帳內南部面第十四ノ里第一統第四ノ

續學申寬九年五十六ノ實末鶴洲

父學生 萬教

祖學生 宗烈

曾祖學生 義機

外祖學生 洪龜用末在林

妻李氏年四十九已酉籍永川

父學生 宜國

祖學生 潤天

曾祖學生 秀攀

外祖及第趙泰脩末楊州

率子甲標年十六壬午

婦金氏年二十五籍安東

柳復暉元心年四十九已酉父良人孫亮 本里

庾辰元心一府上婢汗加年十八庚辰父

金伊孝甲年之口相準者

行縣令

道光三十年 月日 義城官

考庚子歲籍戶口據內南郭而茶十四八智里第一統第一戶
知學申寬九年五十九至實木楊洲

父學生 萬敬

祖學生 宗烈

曾祖學生 義機

外祖學生 洪龜用 木查林

妻李氏年五十二巴西籍 養川

父學生 宜國

祖學生 潤天

曾祖學生 秀華

外祖及第趙春脩 木楊州

妻子甲標 改華協年十九年

婦 金氏年二十八 登西籍 津東

叩後婢元心年四十九 巴西籍 父良人孫免母松婢 康辰元

心一折 婢汗仍存 王康辰 父良人 金名伊 孝丁 西元

行縣令

相準者



行縣令



元心相傳者

元心一區生輝陰節年二十四應召父良人金

竹後輝元心奉五十二百父良人輝先母世輝輝屋床

氏年三十一癸酉籍近東

琴子幸協年二十一壬午

外祖及弟趙泰脩本揚州

曾祖學生秀峯

祖學生潤天

父學生宜國

妻子氏年五十五成申籍赤川

外祖學生洪龜用本赤川

曾祖學生義模

祖學生宗烈

父寄生萬教

知寄申元九年三十五屬本親

考癸卯成箱子已張內金等四等十嚴地重第三欲養二子

道光二十三年月 皇裁誠官

行縣令

仰役婢元心年五十四己酉父良人孫克伊母私婢庚辰元心所生婢漢節年
于七庚辰父良金大石伊寺戸口相準者

婦金氏年三十四癸酉籍安東

率子率協改命祐年二十五午

外祖冬率趙恭修本楊州

曾祖學生秀華

祖學生潤天

父譽進 宜園

妻李氏年五十九戊申籍永川

外祖學生洪龜用本佳林

曾祖學生義模

祖學生宗烈

父守生 萬敬

幼習申完九年午五寅本楊州

考尚午成籍戸口帳由金登國第十區兎里第統第五

道光二十六年月 日義城官

準戶口 32 1849 (憲宗15) 39 × 52

行縣令

元

伊等方口相潭者

元心一初生輝漢節年二年

印後碑元心年五十五

婦 金氏年三十九字素音慶泉

率子命祐年二十八主牛

外祖父等趙恭隆本楊洞

曾祖學生 秀華

祖學生 潤天

父學生 宜國

妻李氏年六十二戊申籍永川

外祖學生洪龜用本在林

曾祖學生 義機

祖學生 宗烈

父學生 萬教

如學申寬九年六十八主廣本鴉洲

考已酉成籍少口縣內金岳面茶十巖堤里茶四統第一戶

道光二十九年 月日義城官



咸豐五年 月 日 義城官

考壬子成籍戶口帳內金嘉西第十殿現里第肆統第三戶

幼學甲寬九年七十二寅未楊洲

父學生 萬教

祖學生 宗烈

曾祖學生 義模

外祖學生 洪龜用 未吉林

妻李氏年子五戊申籍永川

父學生 宜國

祖學生 潤天

曾祖學生 秀萃

外祖各家趙恭偕 未楊洲

子命 祐年 子 壬午

婦金氏年四二辛未籍安東

柳復婢元年至己酉父良人孫免母孫廣辰元心所生婢汗鄭年辛癸
父良人金伊母孫婢元心辛戶理準者

行縣令

光緒十一年 月 日 義城官

考乙酉成續 戶帳內金盆面第十層 號第四統第三戶

幼學申相夏年四十七已亥本鴨洲

父學生 寅協

生父學生 命祐

租學生 寬穆

曾祖學生 萬敬

外祖學生 李觀發本永川

妻李氏年三十二明籍延安

父幼學 邊基

租學生 光稜

曾祖學生 順根

外祖學生 李昱發本永陽

繼子 周燦年二十三 家亥

婦朴氏年二十三 甲子籍春川

侄龍燦年十六 庚午

行 曝令



△△

△△

(二) 測量圖

測量圖 1 1909 (隆熙 3) 24 x 31

